

제410회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3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3년12월5일(화)

장 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5)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9)
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8)
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3)
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2)
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6)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6)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00)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92)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2)
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0)
1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4)
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9)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4)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5)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3)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87)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0)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5)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30)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2)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0)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0)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9)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1)
26.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최재혁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63)

27.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불법 공매도 개선의 즉각 시행과 국회와 감사원의 금감원, 금융위, 한국거래소 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서경호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65)
28.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및 공매도 제도 개선 후 재개에 관한 청원(유형우 외 50,42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70)
2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2)
3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4)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770)
3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7)
3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9)
3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2)
3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9)
3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3)
3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60)
3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50)
3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3)
40.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56)
4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2)
4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3)
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1)
4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
4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
4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
4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
4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
4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
5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
5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
5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6)
5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4)
5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0)
5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0)
5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2)
5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8)
5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
5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60.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80)
6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8)

6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
 6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48)
 6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8)

상정된 안건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5) … 5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9) … 5
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8) … 5
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3) … 5
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2) … 5
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6) … 5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6) … 5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00) … 26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92) … 26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2) … 26
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0) … 26
1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4) … 26
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9) … 26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4) … 26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5) … 26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3) … 26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87) … 26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0) … 26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5) … 26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30) … 26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2) … 26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0) … 26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0) … 26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9) … 26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1) … 26
26.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최재혁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63) … 26
27.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불법 공매도 개선의 즉각 시행과 국회와 감사원의 금감원, 금융위, 한국거래소 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서경호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65) … 26
28.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및 공매도 제도 개선 후 재개에 관한 청원(유형우 외 50,42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70) … 27
2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2) … 27
3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4) … 27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770)	27
3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7)	27
3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9)	27
3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2)	27
3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9)	27
3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3)	27
3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60)	27
3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50)	27
3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3)	27
40.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56)	27
4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2)	27
4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3) ..	27
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1) ..	27
4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	27
4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	27
4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	27
4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	27
4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	27
4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	27
5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	27
5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	27
5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6)	27
5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4)	27
5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0)	27
5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0)	27
5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2)	27
5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8)	27
5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	27
5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27
60.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80) ..	27
6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8) ..	27
6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 ..	27
6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48) ..	27
6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8) ..	27

(10시15분 개의)

○소위원장 김종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가보훈부 소관 법률안 7건과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57건입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보훈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가보훈부 윤종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발언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5)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9)
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8)
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3)
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2)
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6)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6)

(10시16분)

○소위원장 김종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의사진행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사실상 저희 1소위가 올해는 오늘 하고 또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임시국회 일정상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급한 법률안은 오늘 가부간에 의결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필요한 법안들은 웬만하면 오늘 소위에 상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소위 심사를 할

때 가능한 한,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소위에서 판단을 못 하면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하다 보면 심도 있는 심사를 더 이상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한 한 필요한 판단은 한다는 각오로 꼭 필요한 부분들, 필요한 법안에 대한 필요한 판단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여러 안건들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1페이지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30년 이상으로 하되 특수 공적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경찰·소방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장래 안장 수요, 소요 예산 등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안 심사를 하여야 된다는 말씀, 시행 준비를 위해 시행일을 1년 후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평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역할이 있으므로 실현 가능한 안을 가지고 보훈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공무원 중에 경찰·소방 외에 비슷한 요구가 있는 직종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경찰·소방 공무원의 공식적 입장의 확인이 필요하고 재직기간 계산에 있어 시행령으로 가면 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고령화 사회 진입 안장 문화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연령을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하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보 공유를 한 다음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과 경찰·소방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은 동일하게 10년 이상 복무자는 호국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20년 이상 복무자는 현충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중간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사망이 직무 활동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부분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고 정부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법안소위 논의 관련 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소방·경찰의 장기재직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 경찰, 소방 그리고 국방부, 보훈단체 등 의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구용역이 내년 1월까지 준비 중에 있는 만큼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고 좀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윤창현 위원 교정공무원 문제도 같이 보고 계십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교정공무원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니까 소방하고 경찰하고 동일하게 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윤창현 위원 그것도 다 고려 대상으로 해서 검토 중이신 거예요? 아직 결론은 못 내신 거다 이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법률을 개정하자면 이견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용역과 더불어 같이 그런 걸 병행해서 한 후에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창현 위원 그러면 경찰·소방·교정, 이렇게 3대 직군인가요? 또 있나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현재 자료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보훈단체, 1쪽에 있습니다. 호국원의 경우에는 주 안장 대상인 월남참전유공자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이런 쪽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고요. 현충원의 경우에도

월남참전유공자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이런 데서 부정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어떨냐 하는 생각입니다.

○윤창현 위원 반대가 심합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받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윤창현 위원 대화를 해 보셨어요? 어떤 정도예요? 한번 간단하게.

○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 오진영 실무 협의를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네요, 일단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분들은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으로 하는 것은 본인들의 영예성이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 단체가 있고요. 특히 국방부도 비슷한 수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는 부군이, 대부분 부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돌아가서 가지고 현충원에 모시거나 했는데 그런 기준들이 다 형해화되고 몇 년간, 몇 십 년간 복무하셨다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들의 명예는 뭐가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조응천 위원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속기가 되지요.

○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 오진영 죄송합니다.

보훈정책실장 오진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저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찰·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되고요. 교정이 그것에 해당합니까? 그리고 만약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전 공무원으로 다 확대한다는 논리도 성립하기 때문에 교정은 거론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은 전시가 아닌 평시예요, 물론 휴전이기 때문에 전시의 연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경찰과 소방의 업무, 국민 안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임무 자체도 보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보훈단체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게 봉안의 경우고 실제로 표기나 이런 데서 본인들의 영예를 훼손하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적극적으로 보훈부가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비용의 문제에서도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그 대상자가 한 번에 다 돌아가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연령대의 평균 사망률 같은 것 감안해 보면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훈부가 계속 용역, 용역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하고 그다음에 반대나 이런 입장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지 지금 용역을 핑계 삼아서 법안 논의를, 이미 많이 논의된 걸 반대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저희들도 결코 반대하는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 용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을 반영해서, 검토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런데 보통 정부가 용역한다 그러면서 법안을 보류시키거나 판단을 유예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법안 발의·상정된 직후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도 계속 용역 때문에 뭘 못 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입법의 불성실한, 입법 과정에 대해서 불성실하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동안의 용역에 대한 중간판단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런 판단의 결과를 가지고 한번 입법 논의하는 데 필요한 참고의견들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조응천 위원 차관님, 내년 1월 달에 용역의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때 착수한다는 얘기에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지난 8월 달부터 해서요 내년 1월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 같은 것은 받아본 적 없어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지금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래도 대충 결론이 어떻게 나오겠다 얘기 들은 건 없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이렇게 보면 재직기간에 따라 가지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사례는 군인도 그렇고 외국에는 사례가 드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정책을 할 때 통상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확인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주요국이 어떠한지, 왜냐하면 사실 아시는 것처럼 안장 능

력·여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군인 중심으로 하던 것들을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이런 분들로 확대하는 정책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가 잘 정비된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응천 위원 해외 사례에 대해서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보훈부에서 해외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게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간략하게 한 것들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라든가 소방공무원 이런 분들을 위한 국립묘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없습니다. 없는 걸로 저희들이 그냥 러프하게는 확인이 됐고요. 영연방 같은 경우에는 군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국립묘지 대신에 공원 형태의 국립기념수목원 형태로 하거든요. 그래서 나라별로, 특히 경찰하고 소방 같은 분들 경우에 어떻게 모시는지……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경찰·소방이 로컬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꼭 외국하고 같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사례들을 판단해서, 우리는 경찰이나 소방 형태가 아주 세계적으로 특이하거든요. 국가 중심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지금 말씀으로 하실 게 아니고 혹시 문건으로 작성된 게 있으면 좀 주심사 하는 그런 말씀인데, 있으면 복사해서 좀 돌려 주시고.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그것은 따로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어쨌든 제 의견은 이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인데 제 1조(목적)에 가장 부합되게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립묘지는 뭐냐?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이 개정안의 내용이 1조(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리고 용역을 말이지요 1월 달로 잡아 왔다는 게, 용역이라는 게 협의에 따라서는 6개월 할 수도 있고 3개월 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내년에 총선 있다는 것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법안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12월이면, 정기국회면 대개 법안 심의가 마무리돼서 그다음 해, 총선 있는 해 보면 사실상 법안 심의가 어렵다는 것 다 알 텐데, 한두 번 해 보는 것도 아니고. 1월 달에 용역 나온다는 건 이 법안 심의에 용역 결과는 별로 필요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위원장님, 저희들이 법안을 봤을 때 굉장히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테 소방·경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절대로 국립묘지에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든가 그런 전혀 아닙니다. 지난번에 대통령님 지시사항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내일을 굉장히 시급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좀 더 시간을 갖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을 더 주시면 저희들 관계기관의 이견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해소를 하고요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니까 1월 이후에는 법안 심의를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선거 때문에.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1월 이후에 용역 나와 가지고 그때 심의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때 소집하실 수 있어요, 차관님?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아니요, 국회 끝나기 전에 보면 5월이라든가 4월 말에도 통상적으로 해서 현안 법안은 계속 처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니까 그게 심의가 어느 정도 된 법안이나 마지막에 하는 거지, 용역 같은 경우는 정기국회 법안 심의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어야지 그것을……

위원님들, 추가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한규 위원 차관님, 현재 현역 군인들이 사망하는 인원이 1년에 한 100여 명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자살로 인한 비율이 한 80%가 넘는 것 같고 나머지 실제 업무로 사망, 자살 외 업무로 사망하시는 분은 한 20명 이내 아닌가요? 대략 다른 수치를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 오진영 정책실장입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차관님, 지난주에 저랑 같이 제주도에서 사망한 소방관의 장례식장에 같이 가셨는데 1년에 소방관도 돌아가시는 분이, 자살 외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그 정도 숫자는 되잖아요, 현재. 그리고 소방관은 통계도 보면 일반공무원보다 사망 나이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업무 과정에서 흡입한 유독가스라든지 아니면 소방현장에서 동료가 사망하는 것을 본 스트레스 때문에 평균 5세 이상 조기 사망하는 걸로 통계가 있었는데요, 강병원 의원실에서 보도한 자료가 예전에 있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하면 제가 봤을 때, 물론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만큼 생명의 위험이 크지는 않지만 소방관이나 최소한 경찰 중에 강력사건에 대응하는 분들의 위험은 제가 봤을 때 현재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상당히 크고 유사하지는 못할 지언정 거의 비견하다고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그런 위험 측면에서 분석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1월에 결과가 나왔을 때 분명히 여러 보훈단체 의견을 고려하면 반대가 많다, 그래서 여론 수렴해야 된다 이런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제주도 소방관 사망 사건을 보면서, 또 현장에 있는 다른 소방관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장례식장에도 못 오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장례문화상 예전에는 다 매장을 했던 것을 지금은 바뀌어서 납골을 하는 것처럼 한 10년, 20년 되면 납골문화도 더 간소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과 장소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1월 달에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통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구요. 법사위에서 다음 심의를 하기 전까지는 보고서가 나올 테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보고서를 보고 논의할 기회를, 또 본회의 전에 다른 위원들한테 검토할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총선 등의 상황

을 고려해서 지금 통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윤한홍 위원님.

○윤한홍 위원 이게 지난 소위에서 논의가 될 때 30년 기준 이야기가 많이 동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30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 헌신 정도에 따라서 보훈부가 판단해서, 30년이 안 된 경우에는 보훈부가 심의를 해서 하기로 하고 또 30년이 넘었다 해도 비리가 있다든지 잘못이 있는 경우는 배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보훈부가 심의 과정을 거쳐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까지 사실은 지난 소위에서 이야기가 된 거예요. 되면서 그때 위원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해마다 얼마나 나올 거냐, 여러분들이 몇십만 명 통계를 가져 왔는데 연도별로 얼마나 될 거냐, 그다음에 비용은 얼마나 들 거냐, 33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될 거냐. 그다음에 이 법이 통과되면 기존에 소급적용까지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사실은 진도가 나갔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보훈부에서 오늘 여기 자료를 냈거든요. 이걸 보면 보훈단체에서 반대한다 하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반대하는 이유가 뭘겠습니까? 보훈부차관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반대하는 이유.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아까 보훈정책실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국립묘지가 군 위주로 있었는데 약간 경찰하고 소방 업무의 특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럴 겁니다. 소방이나 경찰이 우리 군인들보다 국가에 대한 헌신 정도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장소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느 것이겠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근무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윤한홍 위원 아니, 아직 안 돌아가신 분들은 혹시나 장소 부족을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니까 장소가 부족해지지 않을까, 그런 것도 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일정 부분은……

○윤한홍 위원 아니, 잘 연구를 해 봐요. 생각을

안 하고 온다니까. 단순히 자기들은 봉사를,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경찰·소방관은 헌신의 정도가 자기들보다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혹시나 내가 가야 될 장소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반대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추정을 해 봅니다.

두 번째, 여기 3페이지 여러분이 낸 자료 추계를 보면 30년 이상을 하면 경찰과 소방을 합쳐서 연간 1971명,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윤한홍 위원 33년 이상으로 갔을 때는 연간 1237명 이렇게 가져왔어요. 가져왔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심사를 받아야 되겠지요. 이분들이 100% 다 되는 것은 아닐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분들도?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규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렇지요. 이걸 필요조건이고, 30년 33년 하는 것은 필요조건이고, 또 그분들 대상으로 여러분이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 사람까지 다 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소급적용 시의 통계가 또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30년 이상의 경우 연간 1000명 정도 추가가 되고 33년 이상에서 500명 정도 추가된다. 연간이지요, 이게?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과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들이거든요. 소급적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 30년 이상 소방하고 경찰로 근무하신 분들로 해 가지고 안장하시는 분 하면 4만 9000명 정도 되시고요 10년 이상 다 한다 이러면 14만 명 정도……

○윤한홍 위원 아니, 10년·20년 이야기하지 말고 30년·33년을 물어보잖아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30년 하면 기존에 돌아가신 분들이 이장하셔야 되는 수요가 4만 9000명 되시고요 33년은 2만……

○윤한홍 위원 이분들이 다 기존에 돌아가신 분들입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예, 예를 들면 소급입법을 해서 적용했을 때……

○윤한홍 위원 그러면 연간 사망자는 뭘예요?

○**윤창현 위원** 과거에 연간 1000명 정도가 돌아가셨고 다 합치면 5만 명이 옮겨야 된다는 거지요.

○**윤한홍 위원** 그게 다 돌아가신 분이예요, 앞으로도…… 지금 퇴직하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아니요, 돌아가신 분은 아까…… 위원님, 3쪽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장 수요가 연간 30년 이상 했을 때는 1971명, 33년 했을 때는 1237명이고요.

○**윤한홍 위원** 이것은 살아 계신 분이고……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예, 살아 계신 분이고.

○**윤한홍 위원** 앞으로 퇴직 수요 예상한 것 아니예요, 이걸?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그렇습니다. 옛날에 퇴직하신 분들 중에도 생존해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예를 들면 24년부터, 내년부터 한다고 봤을 때 30년 이상이 1971명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4페이지에 있는 연간 사망자는 의미가 없는 거네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예, 이것은 의미가 없고요 기존에 돌아가신 분들을 전부 이렇게……

○**윤한홍 위원** 총 이장 수요만 필요한 거네?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윤한홍 위원** 5만 명인가요, 30년으로 하면?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예.

○**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 오진영** 전제를 단순화하면 이분들이 한꺼번에 이장 신청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윤한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제가 묻는 것만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소요예산은 30년으로 했을 경우에 소급까지 하면 47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30년 이상으로 소급까지 하면 괄호 안에 있는 1363억 원이고요, 소급 안 하면 향후 5년간 235억 원 이렇게 됩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논의를 해야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필요성은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30년, 33년 이런 것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고 국민들 감정이라든지 다른 단체의 감정을 생각해서 나중에 다시 확대한다든지 이런 걸 추가로 하더라도 현재까지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러면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돼요. 현실적인 부분을 설명해 줘야지.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알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리고 이 소급적용은 미룬다든지 안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면 나는 지금 당장 이 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급적용 문제가 지금 더 큰 문제가 아니냐 싶어요. 5만 명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국립묘지 하나 더 새로 만들어야 되는 수준입니다.

○**윤한홍 위원**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설명하셔야지.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지금 군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소급해서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창현 위원** 제가 한 말씀……

지난번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시작이 되면 분명히 소급적용해 달라, 이걸 왜 우리는 안 해 주나라는 분들이 제가 숫자를 보니까 5만 명, 4만 9588명인데 이거 분명히 강하게 요구가 들어올 것 같아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저희가 봤을 때는 하면 나중에 소급적용해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창현 위원**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예, 같이 모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창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지금부터 돌아가실 분들에 대한 것은 1번 이라면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되고 나면 반드시 일정 기간 지나서 5만여 분의 소급적용 대상자들이 한꺼번에 요구를 하기 시작했을 때 과연 그것을 그대로 방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급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지금부터 돌아가실 분들 1년에 경찰 1500, 소방 460, 이천 분이거든요. 그러면 2000만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만을 일시에 처리해 줘야 될 가능성 이것도 아마 용역 결과에 포함을 해서 그럴 때 어디다…… 시설이 모자랄 것 아니예요, 5만은? 그렇지 않아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예, 새로 모실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윤창현 위원** 그러니까, 5만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라고요. 이천 분은 1년에 2000명씩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오시는 건데 5만은 한꺼번에 확 들어올 거라고요. 그러면 그걸 생각해야지요.

○**소위원장 김종민**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차관님, 소급하는 게 맞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그분은 그 대신 이미 매장이 되거나 아니면 납골이 돼 있는 분들이니까 매장 옮겨야 될 필요는 없는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원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아니면 신청으로 예산 소요에 따라서 이렇게 매년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혹시 법적으로 위헌 요소가 있거나 그럴까요?

저는 위헌 요소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의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 위반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한 10년으로 순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만약에 소급 적용하게 되면 매장 이전 비용들은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옮겨 오는 비용은? 여기 안장 비용은 여기서 부담하겠지만, 그런 걸 고려할 때 신청자가 100%는 아닐 것 같은데 혹시 예측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

○**김한규 위원** 없으면 좋고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그런 부분들은요 좀 더……

○**김한규 위원** 예전에 다른 사례들도 있을 것 같아서, 소급 적용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통상적으로 기존에 돌아가신 분들도 보면 이장 수요가 한 72%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72% 정도요.

○**김한규 위원** 그러면 예전에 소방관도 소급해 갖고 지금 사망하신 분 이장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이 한번에 다 받아 주셨나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예를 들면 소방활동을 하시다가 사망하시거나 상이를 입으셨거나, 제주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재도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모실 수 있거든요.

○**김한규 위원** 그게 아니라 그때도 소급했기 때문에 혹시 한번에 다 옮기셨냐고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1400명 정도……

○**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 오진영** 한번에는 아닙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지난 3월에 돼 가지고요 아직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한규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그분들은 매장

이 이미 돼 있거나 납골이 돼 있기 때문에 1년에 무조건 다 옮겨야 된다고 그분들이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연차적으로 좀 나눠서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저는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는 점에 동의하고 그 부분은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서 몇 년에 걸쳐서 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특히 소급입법 같은 경우에는 일거에 이장 수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위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많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부담이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하지 않도록 법이나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면 가능한 거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그것은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김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일단 논의를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의 잠깐만 할게요.

실장님한테 여쭙볼게요.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 왜냐하면 보훈에 대해 가장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데가 미국이거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전사자가 발생하고 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 오진영**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금방 차관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이 자치제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국가직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떤 독특한 순직이거나 아니면 또 다치셨거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직무에 있었다고 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국립묘지가 있는 것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 같은 경우도, 영연방이겠지요. 그래서 영국,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는 경찰들이 순직하거나 직무수행 중에 다치셨을 경우에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경찰묘지 이런 것들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렇게 국립묘지로 일반화시켜서 직무수행을 한 연도만 가지고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권원을 부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이 생기냐면,

실제로 우리 국립묘지가 만들어진 근거 자체가 우리 군인들, 사실 6·25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극진한 국가 차원의 예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전사자들, 6·25전에 참여하셨던 분들, 상이자들,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을 모셨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평시가 7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 오진영 예.

○강민국 위원 그런데 군인들은 재직기간이 10년이지요? 10년인가?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예, 10년 이상은 호국원, 20년 이상은 현충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 같은 경우도…… 국립묘지의 근본 취지는 군인들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맞고요. 그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70년 동안 평시 상황에서 재직기간만 가지고도 지금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 오진영 제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맞지요?

○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 오진영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지금 평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일선의 현장에서 전시와 같은 조건에서 하시는 분들은 결국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이 맞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 오진영 그런데 근무형태가 저희들이 같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많이 다른 차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군인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격오지 근무가 강제되는 그런 특성도 있고요. 그런데 경찰이나 소방은 어쨌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근무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10년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을 따졌을 때……

○강민국 위원 희망해서 보직이 어디로 발령되는 그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씀이고.

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 오진영 그런데 10년 이상 재직하는 그런 인원들의 비중을 따져 보면 제가 지금 기억하는 바로는 군인들은 10년 이상

재직자가 한 24.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소방은 거의 90% 이상이 10년 이상 재직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나 소방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근속승진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포괄적으로 군인들보다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차관님, 33년 이상 했을 때……

지금 안장비용이 1기당 1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10만 8000원,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안장비용은 1기당 10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강민국 위원 그 정도는 우리 대한민국이 특수 공무원 관계에 있는 그런 분들을 예우해 줄 충분한 여력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33년 이상 해 가지고 절충안을 내는 것도 위원장님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예, 좋습니다.

실장님, 지금 계속 실장님의 발언 취지가 이게 불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 오진영 아닙니다. 뉘앙스가 그렇게 들리셨다면 좀 오해인 것 같고요. 저도 제도적인 부분에서 일정 부분 확대는 필요하지만 이게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 내지 않고 어쨌든 제도를 잘 안착시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제가 어떤 단체의 의견, 반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영예성에 대한 본인들의 욕구, 그러니까 어떤 돈에 관한 것보다도 우리의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소위원장 김종민 좋은데요, 그 단체의 논리를 전달하는 건 좋은데 실장님 발언 내용을 보면, 차관님은 이것은 ‘반대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실장님 얘기 들어 보면 반대인 것 같아요.

○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 오진영 글썽요, 같은 뜻인데……

○소위원장 김종민 정부 입장이 정리가 돼야지 양쪽이, 두 분이 나와 가지고 다른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윤한홍 위원님.

○윤한홍 위원 저는 강민국 위원이 제안한 게 현실에 좀 더 가까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원칙에는 동의

가 되는데 현실을 보고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33년 정도로 하게 되면, 거기다가 필요 조건으로 33년을 하고 보훈부가 심사를 해서 하자가 없는 분들을 그렇게 하게 된다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줄어 들고, 예산이라든지 부담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되면 어느 정도 그 선에서 타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근본적으로 반대 입장은 아니 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을 기다려 보자 이런 입장으로 정부 입장을 정리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소방·경찰 공무원에 대한 묘지 안장 문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거기에서 문제가 소급 적용인데 만약에 안장을 결정한다면 소급을 안 할 도리는 없을 거다.

그러면 소급을 전제로 해서 안장 결정을 했을 경우에 대략 예산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추계를 해 보니까, 보통 현재 소급 대상자 중에 70% 정도가 안장 희망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보면, 지금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랬을 경우에 33년 이상이 되면 향후 10년 동안 매년 약 5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30년 이상 호국원으로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매년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20년 이상 호국원으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약 2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돼요. 이런 정도 예산 범위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 보고 이런 정도 예산이면 우리가 이 법을 의결할 수 있겠는지를 위원님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대략 매년 예산이 10년 동안 56억, 33년은 제가 보기에 아주 최소한인데 이왕 하려면 30년 100억 혹은 20년 200억 이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윤창현 위원 소급에 대한 것은 1600억 정도면 75%, 한 4분의 3 잡으면 1200억인데……

○소위원장 김종민 70%지요. 120억.

○윤창현 위원 예.

○소위원장 김종민 120억, 20년 이상은 20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창현 위원 소급도 생각해 봐요. 소급 한 1200억 정도……

○소위원장 김종민 일단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한마디씩 해 주시고 결정할게요.

○박재호 위원 보훈부가 이런 안이 올라오면 다 수렴도 하고 용역도 주고 이런 걸 빨리 진행해서, 그다음에 국가 예산도 기재부하고 의논도 좀 해 놓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한다 하면 그러면 정확한 입장을, 이것은 지금은 안 된다는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어영부영하면 보훈부의 입장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훈부가 명확하게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 추계까지 이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이것은 단체의 입장이 있어서 좀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러든지 뭔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연히 예산이 좀 적게 드는 범위 내에서 33년 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좋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잠깐 추가하고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년 이상 호국원 안장을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33년은 너무 박하고요. 이왕 우리가 입법 결정을 하는 바에는 30년 아니면 20년으로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호국원으로 결정할 경우에 한 120억 정도 연간 소요되고요. 20년 이상 호국원으로 할 경우에 21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대개 이게 100억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가에서 경찰과 소방공무원 전체에게 국가 헌신과 애민·호민에 대한 보상과 보답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획기적인 메시지인데, 이런 정도면 보통 공무원이 20년 이상을 봉직을 하면 그 봉직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연금 제도도 이렇게 돼 있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전체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에게 주는 메시지는 30년 이상이나 20년 이상이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산 부담이 조금 되기는 하나

예산 부담에 대해서 조금 더 협의를 한다고 해도 20년 이상 한 210억 원 정도 예산 부담을 하는 걸로 한번 판단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견 제 개인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윤한홍 위원** 저도 이야기……

○**소위원장 김종민** 윤한홍 위원님.

○**윤한홍 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소급 적용 대상자가 이렇게 없다면 저는 기한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이의 제기를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그렇지만 소급 적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소방공무원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데 대해서 이의 제기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경찰은 그렇지 않아요. 과거 경찰은 좀 권력자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소급 적용이 문제 때문에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한 거고.

최근에 와서 경찰의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지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측면이 많이 부각이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데 과거는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거든요. 권력자의 이미지가 더 강했던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들이 부정적인 의견이 계속 나오는 건데.

20년으로 하게 되면 저는 이것은 찬성이 안 될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경찰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은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많은 공무원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데 대해서 관리를 하고 돌아가신 이후까지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의미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예산 부분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아까 강민국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33년으로 해서 일단 최소한으로 출발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현실을 좀 생각하고 여러 가지 국민 감정, 국민 생각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헌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도 있지만 일부 경찰은 아직도 권력자의 경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런 의견들이 다수라면 제가 약간 수정 제안인데 사실 소급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건데 우리가 소급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아직 살아 계신 분

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현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입법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입법 목적이 일단 1차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30년 이상이 47억, 20년 이상이 63억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소급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우리가 의논을 해 보는 걸로 넘기고, 현재 살아계신 분들 그리고 현재 근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입법을 해서 20년 이상 호국원으로 63억 정도 예산을 책정하는 걸로 한번 판단해 보는 건 어떨까요?

○**윤한홍 위원** 20년은 반대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각 중앙부처 공무원들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소위원장 김종민** 김희곤 위원님.

○**김희곤 위원** 그러니까 이거 소급 적용은 안 할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김종민 위원장님 20년에 찬성을 하는 이유가 이게 30년이나 33년 되면 아마 상당한 고위층만 해당이 될 겁니다. 고위공무원만, 그건 또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윤한홍 위원** 고위직은 계급정년에 걸려서 33년을 할 수가 없어요.

○**김희곤 위원** 그러니까요.

○**윤한홍 위원** 아니, 고위직은 30년이 안 된다면. 하위직이 30년을 근무하지 고위직은 30년 근무를 못 해요, 계급정년에 걸리기 때문에.

○**김희곤 위원**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조응천 위원** (손을 듭)

○**소위원장 김종민** 잠깐만요. 김희곤 위원님 끝나고……

○**김희곤 위원** 안 맞습니까?

○**윤한홍 위원** 말이 안 맞아.

○**박재호 위원** 어떤 게 맞는지 몰라.

○**김희곤 위원** 저 갑자기 헛갈리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경찰청에서 오늘 나오신 분 계시나요?

잠깐만요. 조응천 위원님 말씀 듣고 경찰청 차장님 의견을 간단히 듣고 그다음에 마무리 지을게요.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 20년으로 자를 경우에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차관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뒤에 20년 이상 근무하신 공무원들 많으신데 나름대로 가정사 내팽개치고 분골

왜신 다 하셨잖아요. 그런 생각들 다들 하실 겁니다. 저부터도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 나도 국립묘지 갈 만한데 싶은 그런 생각 든다고.

20년 그것은, 이게 연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아닌 것 같고요. 저는 30년이나 33년이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년퇴직한 사람한테 혜택 주는 게 어떠냐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끝까지 공직에 봉직하고 정년으로 명예롭게 마친 분들이야말로 갈 자격이 있지, 30년 채우고 나와서 세컨 라이프를 실컷 누리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30년 채웠다 해 가지고 그리하시는 것은 좀 그렇다. 왜냐하면 30년 마치고 나와서 대기업의 고문이다 뭐다 해 가지고 많은 호봉 받고 이렇게 스카우트돼 가지고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과연 그것까지 우리가 허용할 것이냐.

일단 정년퇴직하신 분으로 자르면 조금 그래도 거부감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 말씀드려 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장님, 20년·30년 정년퇴직 이 연수 제한에 대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정부 입장을 차관님께서 정리해서 의견 해 주시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차장 조지호 논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위원장 김종민 잘 안 들려요.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윤한홍 위원 누구예요?

○경찰청차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조지호입니다.

보훈의 문제는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이상 충분해야 되고 또 차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찰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 1년에 평균 약 15명의 경찰관이 순직하고 1년에 연평균 약 1800여 명이 공상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공상 비율은 일반직 공무원의 4.4배입니다. 위험 직무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의 경찰관들이 국가로부터 충분히 지원받고 보상받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더 많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20년은 현충원, 10년은 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해 달라는 정도는 아니고 군인의 재직의 특수성 그리고 경찰과 소방의 재직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한 30년 현충원, 20년 호국원 정도는

되어야 일선 경찰관들에게 충분한 사기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좋습니다.

차관님, 종합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재직 기간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문제는 기관 간에 다양한 이견들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연구용역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5쪽에 한번 보시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직무의 범위라고 해서 1호·2호·3호·4호·5호·6호 있거든요. 보시면 일반 공무원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부분도 모든 경찰공무원들을 다 인정을 해 줘야 되는지, 다 이렇게 기간에 산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다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의견을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안을 놓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래서 언제 하자고요. 언제 할지를 얘기를 해 주셔야지……

○강민국 위원 용역보고서 언제 나와요?

○소위원장 김종민 아니, 그런데 용역보고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쟁점들은 이전에 이미 충분히 검토가 가능했던 쟁점들인데 별로 검토의견이 없는 거지요.

○윤한홍 위원 나는 33년으로 해서 일단 법을 해 주는 게 맞지 싶은데, 20년으로 너무 늘리면 그 반대가 나와서 법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현실적인 안을 타협을 하자고 한 거지. 20년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반대가 나와서 법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대학 20살에 들어가 가지고 40살 되면 20년을 한 거예요. 40살 돼서, 60살까지 근무를 하는데……

아까 김희곤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또 오해를 잡아야 될 게……

○소위원장 김종민 일단 그러면요……

○윤한홍 위원 계급이 안 올라가면 오래 근무하지만 계급이 빨리 올라가는 사람은 빨리 집에 가요. 그래서 연한이 짧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김희곤 위원님도 반대로 알고 계신 부분이고, 계급이 빨리 올라가신 분들이 계급정년에 걸려서 빨리 나가요.

○소위원장 김종민 일단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20년은 저하고 김희곤 위원님 두 분만 주장하는 걸로 확인이 됐고.

30년이나 33년이나 아니면 조응천 위원님 제안한 대로 정년이나, 이 세 가지 중에 판단 한번 해 보시지요. 정년안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윤한홍 위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오기형 위원 일단 정년으로 해 놓고 논의를 나중에……

○강민국 위원 정년이 보통 몇 년이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계급정년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처럼 60세 퇴직하는 게 아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연령정년으로 해야지 계급정년으로 하면……

○조응천 위원 계급정년 아니고 연령정년으로.

○윤한홍 위원 연령정년으로 해야지.

○소위원장 김종민 계급정년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강제로 나가라는 건데 그것은 그 사람 정년이라고 봐야지. 정년은 국가가 요구하는 연수를 다 채운 걸 정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응천 위원 3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정년으로 퇴직한 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용우 위원 그것 좋다.

○조응천 위원 3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정년으로 퇴직한 자.

○윤한홍 위원 그것 좋네요.

○박재호 위원 이게 몇 명쯤 되는지 알아야지.

○조응천 위원 이중 안전장치잖아.

○이용우 위원 얼마 많지 않아요. 아까 30년 숫자에서……

○박재호 위원 그게 좋네. 그거로 하지.

○강민국 위원 조응천 위원님 말이 맞아요. 30년 근무하고……

○윤창현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30년 안으로 하고 정년으로 퇴직한 자라는 조항을 붙여서 조응천 안으로 ‘30년 이상 호국원’ 이렇게 해서 우리 대안을 만들어서……

○조응천 위원 ‘정년으로 퇴직한 자’ 그렇게 하면……

○소위원장 김종민 그리고 이 과정에 현충원 안장자격은 별도 심사규정을 두는 거예요, 안 두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다 호국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현충원에 계시는 분은

지금도 저희들 순직하신 분이나 재직 중에 상이하신 분은 그렇게……

○소위원장 김종민 오케이. 그러면 그것을 빼고.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호국원 안장 기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분들 중에 정년퇴직한 분들 이렇게.

○윤한홍 위원 그리고 30년 안 됐어도 시행령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인가 그것을 통해서……

○소위원장 김종민 그것은 현행법에 돼 있어요.

○윤한홍 위원 돼 있고요. 그다음에 30년 정년 퇴직했다라도 심의를 하세요. 비리나 비위, 부정 부패에 있는 사람은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지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것은 안장법에 다 돼 있어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그것은 저희들, 1년 이상 금고형을 받는다고 그것은 배제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예 훼손……

○강민국 위원 그뿐만 아니고 직무 중에도 범인 있는데 도망가고 이런 경찰들은 빼야지.

○윤한홍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은 좀 더 정치하게 만들면 경찰 분야에서도 업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윤한홍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다 나눠야 돼요. 경비라든지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은 대접을 해 줘야 되지만 교통경찰 이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조응천 위원 검무 이런 건 아니잖아.

○윤한홍 위원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용역한다 해 놓고 세월 다 보내서 지금 그리된 거라니까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그것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시행령으로 위임해 가지고 보훈부에서 철저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러면 되지.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그 문안을 예를 들어서 ‘소방·경찰 공무원 중에 국민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분, 이것을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뭘 해야 되거든요.

○박재호 위원 시행령으로 정하면 되겠네.

○조응천 위원 타 경과가 난리날 건데.

○소위원장 김종민 그런데 제가 보기에 경찰

업무라는 게 이게 한군데만 딱 평생 입직부터 퇴직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할 텐데 우리가 입법효과를 기한다면 이것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박재호 위원 시행령에 맡겨 놓으면 됩니다.

○강민국 위원 실제 소방공무원 같으면 이게 논란이 없을 건데 경찰공무원이다 보니까 논란이 많은 거예요, 국민들로부터 신뢰관계도 있고 하니까.

○윤한홍 위원 왜냐하면 국수본에 근무하는 경찰은 검사들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수사만 하잖아. 그러면 권력자잖아.

○소위원장 김종민 그런데 그런 분들은 숫자가 얼마 안 될 거고 대부분의 경찰이 결국 치안이나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숫자가 많을 텐데……

○윤한홍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거지.

○소위원장 김종민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박재호 위원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특혜야.

○강민국 위원 맞아요.

○조응천 위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제2조에 보면, 2조 1호 이것은 딱 떨어지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이게 1호입니다. 2호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의2가 범죄피해자 보호. 3호가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호가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호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6호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호가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제가 보기에는 1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2호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3호 경비,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이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딱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조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에다가 집어넣든가 안 그러면 시행령에 위임해 가지고 시행령에서 ‘경직법을 원용해서 경직법 제2조 1호·2호·3호의 업무로 주로 근무하고’ 이런 단서를 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겠지요.

○소위원장 김종민 제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조금 거기에 반대 의견인데요. 보통 우리가 군인들도 전투에 종사하지 않고 내근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업무가 국방 안보하고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내부에서 행정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업무로 인해서 밖에서 작전하는 사람들이 작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위해가 가능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전선에 계시는 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일을 하려면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움직이는 전체적인 업무가 또 돌아가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딱딱 구분하는 게, 저는 아무리 시행령에 위임하더라도 그게 또 다른 약간 불필요한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뒤에서 그런 서포팅하는 그룹이 없으면 현장 일선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아까 경찰청 차장님 말씀에 조금 반감이 오더라고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내가 해외 사례도 잠깐 여쭙어봤잖아요. 그렇지요? 해외에 보니까 경찰관 순직공상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거든요, 외국도. 우리나라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재직 기간으로 하는 건 정말 이것은 유일무이하게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하는 거고 우리 정무위에서 하는 건데 그만큼 소방공무원 또 경찰공무원 예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인데, 저는 아까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걸로 해서 시행령에서 엄격하게, 보훈부 안에 심사위원회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비리 등등의 많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특히나 직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범인을 놔 두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이 도망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았잖아요. 직무에서도 이런 분들은 나는 좀, 그런 것을 심사를 철저하게 시행령으로 해서 보훈부가 심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방금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거고 그래서 30년 재직하고 정년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 안장은 시행령에다 위임해서 철저하게 보훈부에서 심의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일단 논의를 정리해 보면 30년 이상 재직자 중에서 정년퇴직한 분들 대상으로 호국원에 안장하는 걸로 법안을 대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관련해서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걸 빠뜨렸다 그러면 전체회의 전이라든가 아니면 본회의 전에 얘기를 한번 해 주셔서 수정안 기회는 있는 건데 일단은 이 정도 해서 의결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한규 위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소위원장 김종민**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제외되는 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이게 사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경우가 아주 적습니다. 과연 또는 해임되는 분으로 제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0년 이상 근무하는 분으로 치면 과연·해임은 당연히 안 되지 않습니까? 30년 이상 근무하면 과연·해임이 없으니까 사실상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제외되는 분이 없게 지금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징계 이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든지 이런 게 장기근무로 대상이 되는 분한테는 특별히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법에 보면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그 밖에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이 있어서 법을 바꾸지 않고도 이 규정을 좀 더 바꿔서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근속기간으로 해당되는 분들은 중징계 이상의 분들은 제외한다 이런 내용을 여기에다 넣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을 바꾸기 어려우면 저희가 그런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서 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그런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것은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시행령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아마 법률 위임규정이 없으면, 현재 군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군인으로서 퇴직하고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이용우 위원** 기술적으로 하면서 부대의견에 그 정신을 첨부해 주면 시행령을 그렇게 만들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조건을 다 나열하는 것보다……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위임규정을 같이 만들어 놓는 게 낫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부대의견으로 그런 것을……

○**강민국 위원** 그래요. 그것까지 여기서 다 할 수 없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정리

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조응천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게 국립묘지 설치·운영법 제10조 이 조항입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안장대상심의위원회 10조입니다.

○**조응천 위원** 10조? 이게 유공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한정적으로 특정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심의 대상이 10조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앞쪽에 안장대상자에 규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양쪽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5조에도 나와 있고요.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법 조항에 보면, 우리가 지금 경찰·소방 공무원에 대해서 하더라도 이 10조 정도에 구체적으로 넣어 줘야지 될 것 같은데……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넣어 줘야 됩니다. 규정을 넣어야 됩니다.

○**조응천 위원** 안 넣어 주면 위임이 안 될 것 같은데?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 조항의 형식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조에 들어갈지를 보고 그 조항에 맞춰 가지고 그것은 한 줄만 넣으면 되잖아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10조에 넣을지 아니면 5조에 추가할 때 넣을지 양쪽에다가 위임규정을 넣어 봐야 됩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절차적인 문제니까, 취지는 다 동의하셨으니까……

○**소위원장 김종민** 법문을 한번 안을 제안해 보세요.

○**조응천 위원** 안 짜서 가지고 오후에 회람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받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일단 의결을 해 놓고……

○**윤한홍 위원** 이것은 나중에 끝나기 전에 의결하면 되잖아요.

○**소위원장 김종민** 아니, 가신단 말이에요.

○**윤한홍 위원** 예?

○**소위원장 김종민** 가신다고. 오후에 또 오라고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다 동의하셨으

니까……

○소위원장 김종민 일단 의결해 놓고 지금 이 법문을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면 마무리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구해서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위원장님 하나만, 소급입법 여부하고요 또 하나는 시행시기를 얼마로 할지.

○소위원장 김종민 시행시기는 어떻게 할까요?

○조응천 위원 1년 이상 넣어야지.

○소위원장 김종민 1년?

○강민국 위원 1년 이상은 해야지.

○소위원장 김종민 어차피 소급이니까 1년 이상이면 상관없지요. 시행시기는 1년으로 하고……

○조응천 위원 지금 소급이예요?

○윤창현 위원 아니요. 각오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조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소급 아니잖아.

○윤창현 위원 예, 현재로서는 아니고. 그런데 금방 소급으로 가지요, 이제.

○조응천 위원 소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지요?

○윤한홍 위원 그것은 현실 인정이지.

○이용우 위원 소급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넣는 건 아닌데 나중에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그것을 넣을 필요는 없는데 당연히……

○조응천 위원 이렇게 하고 나면 소급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라는 거잖아요?

○강민국 위원 그렇지.

○김한규 위원 그것은 예산 마련도 나중에 좀 하고……

○박재호 위원 예산 마련도 하고 나서……

○강민국 위원 1년 이상?

○윤한홍 위원 1년 이상은 가야 돼요.

○소위원장 김종민 1년 이상.

○윤한홍 위원 그다음에 필요하면 호국원을 하나 더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응천 위원 지금 그리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종민 하나 더 지어야 됩니다.

○조응천 위원 결국은 다른 보훈단체에서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시면 다른 것을 따로 하나 만들 필요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박재호 위원 소방하고 경찰 호국원을 하나 만

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일단 의결하고 이것 관련된 조항들은 문안 조정을 해서 포함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1페이지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국가유공자법 상이등급 체계 미만인 분들이—76%입니다—포함되지 않는 경우 쟁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말씀과 상이등급에 따라 국가유공자법과 5·18민주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며 개정안 내용을 반영할 때는 2개의 법을 1개 법으로 통합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안입니다. 5·18민주화운동사망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공로자를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6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의 예우에 관해서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정부 의견 얘기해 주세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2002년도에 5·18민주유공자법 제정을 할 때에도 국가유공자법 개정이 아닌 별도로 제정한 취지가 있습니다. 이때 아마 기존의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유공자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성격이 상이한 5·18민주유공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리고 상이등급 체계가 국가유공자는 7등급으로 돼 있는데 5·18보상법은 1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반적으로 감안해서 다르게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이것은 제가 그동안에 쪽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제 개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의견 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5·18민주유공자법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킬 만한 때가 됐다고 봅니다. 아까 보훈부 차관이 말씀 주셨듯이 처음에 논의했을 때 국가유공자법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사실상 5·18유공자에 대한 정치적 판단, 여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 수준의 약간의 취약성,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5·18유공자를 우리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하나의 국가유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확산됐다고 보여지고.

단적으로 간단한 비교 대상이면 4·19유공자거든요. 4·19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시킨 이유가 그런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지금 이미 국가기념일 그리고 대통령 참석 행사로 국가적으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저는 5·18도 4·19와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아까 형평성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이등급 체계가 좀 다른 것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체계에 맞게 조정을 하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상 5·18유공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유공으로 인정이 됐는데 국가유공으로 되면 인정을 못 받게 되는 이런 분들이 70%나 돼요. 그러니까 30% 정도밖에 국가유공자에 편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익도 감수하겠느냐, 이것을 여러 번 그 단체에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여러 번 자체 회의를 거쳐서 비록 30%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등급 체계에 인정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해

달라는 게 그 단체의 회의 결과이기도 하니, 그 점에서는 우리가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조정을 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개인 의견을 잘 들었고요.

저번에 민주유공자법도 마찬가지로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소신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리는 있는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차관님, 여러 가지 당시의 입법 제정 취지 이런 것은 설득력이 약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기존 국가유공자법의 상이등급하고 5·18유공자 장애등급체계가 일치하지 않고 이런 심사상의 어려움도 있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예, 그리고 5·18보상심의위원회…… 지금 국가유공자 적용받는 것은 자료 관리라든가 모든 것들이 국가보훈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5·18 관련해서는 저희가 등록요청이 오면 되는 분들만 등록이 되고 사실 심사자료나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분들이, 정확하게 5·18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분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보상받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자료 공유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5·18민주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보상체계라든가 심사부터 저희하고 다르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만약에 국가유공자로 편입한다면 실질적인 지원 대책, 보훈급여금 등 여러 가지 제반 예산 사항이 발생하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지금 법에는 타이틀만 국가유공자법에 넣고요. 그다음에 예우 관련된 것은 현재 나와 있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따르도록만 돼 있어 가지고 현행 규정상으로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민국 위원 국가유공자 편입을 계속 요구하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예, 특수임무유공자, 무공 포상자 또 예를 들면 현행 법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에서 76%가 12·13·14등급으로 우리 상이체계로 했을 때는 상이군경에 해당이 안 됩니다. 등급 외

로 되거든요. 이런 분들도 예를 들면 현행 규정대로 하면 5·18하고 형평을 맞춰서 해 달라 이런 요구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그때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별도로 법안을 만든 것으로……

○강민국 위원 상이등급 기준 미달자 등 여러 가지 형평성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심사자료가 없다는 것은, 그러면 5·18유공자들은 어디서 심사를 합니까? 제가 그 부분은 문의한이라서 여쭙보는 겁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있어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예.

○소위원장 김종민 별도 심사를 했어요.

○강민국 위원 국가유공자로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이것은 그냥 넘길 게 아니고 하여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구요.

이게 그러면 언론에서 나왔던 5·18유공자와 관련 없는, 관련이 없는지 모르는데 특정 정치인들 이런 분들도 5·18유공자로 명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어쨌든 자료를……

○강민국 위원 보훈부에서는 자료가 없나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사실 아니에요.

○강민국 위원 그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하도 언론에서 나오길래 그런 부분을 제가 잠깐 여쭙보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체계 그리고 편입 시 실질적인 지원 대책에 대한 다른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숙성시켜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주경 위원 만약에 국가유공자법의 유공자가 된다면 5·18유공자 명단도 당연히 공개되는 건가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여기 들어온다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윤주경 위원 다른 유공자들은 다 명단이 공개되는데 이것만 안 되는 것은 또 형평성에서 어긋

나는 것 아닌가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종합적으로가 아니라 이 법이 되면 당연히 여기에 명단이 올라가고 공개가 되지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여기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 오진영 보훈정책실장입니다.

제가 첨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개인정보 공개에 의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안 된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한다고 그러면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주경 위원 그렇다면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니까 보훈부는 내용을 아는 거지요. 보훈부는 알잖아요,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윤한홍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논쟁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 생명·신체 희생을 했다 하는 것은 다 인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까 보훈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선정 과정이나 선정 기준이나 또 누가 유공자냐, 아직 투명하지가 않거든요. 투명하지 않는데 이게 국가 기밀 사항도 아닌데 투명하지 않다면 이것도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아까 경찰·소방 공무원 호국원·현충원 안장까지도 전향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반대하고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냥 계속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가다 보면 이 내용 또한 선정 기준·과정, 명단도 모르는 채로 국가유공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투명하다면 그 모든 자료가 선정 과정부터 해서 명단까지 보훈부로 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부터 일단 정리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국가유공자법 전체적인 틀, 체계를 용역을 하든 어떻게 하든 보훈부가 됐기 때문에 하나로 다듬어야 돼요. 그다음에 거기서 같이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그냥 주먹

구구식이예요. 개별법 하나 만들었다가 세월 지났으니까 국가유공자법에 들어가라?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훈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진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5·18유공자, 국가유공자잖아요. 보훈부가 관리해야지요. 왜 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체계부터 해서 관리, 모든 것을 국가가 가져와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요구하는 거지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당연히 국가유공자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의 법 속에 들어가야 맞는 거지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5·18보상법을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로, 보훈부가 됐잖아요. 체계를 잡아 줘야지요. 계속 내버려두고 방치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법이 올라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소위원장 김종민 차관님, 얘기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지금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실천하려면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18유공자법과 국가유공자법이 별도로 있는 한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국가유공자에 포함을 시키면 윤한홍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왜? 보훈부에서 다 심사도 하고 관리도 하게 되니까 거기서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용빈 의원안에 지금 나와 있는 세 가지 조항들을 추가하는 것인데다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보훈부의 국가유공 심의 절차를 거친다, 이런 정도만 해 놓으면 지금 윤한홍 위원님이 제안하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윤한홍 위원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5·18유공자법을 고쳐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보훈부에서 심사를 받도록 해라 이렇게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도 국가유공자에 편입을 시켜서 여기에서 다른 유공자들과 똑같이 심사도 받고 검토도 받고 예우도 받게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아니냐……

윤창현 위원님.

○윤창현 위원 그러면 이 법에 따르면 5·18민주유공자들 전체가 다 국가유공자로 들어오는 겁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그것은 5·18민주유공자법에 따라 가지고, 3쪽의 법조문 아래쪽에 보시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취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대부라든가 학자금 용자 이런 것을 다 받고 있습니다, 현재.

○윤창현 위원 1번, 받고 있다. 2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여기에서 이 규정이 생기면 현재는 그분들이 5·18민주유공자로 예우를 받는데 여기는 명칭이 국가……

○윤창현 위원 전체가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원이?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가 다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윤창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0%는 넘어오고 나머지는 못 넘어온다, 쉽게 말해서 1~7등급 사이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그런 것은 다 하려면 심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아예.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18민주 보상에 관한 법률을 다 개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4·19 같은 경우에는 4·19 의거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다쳤는지 우리 보상심사위원회에서 요건 심사를 다 합니다. 하고 보훈병원에서 상이……

○윤창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 국가유공자가 A 그룹이라면 그다음에 5·18 유공자로 돼서 이쪽으로 넘어온 B 그룹이라면 A, B그룹이 다 국가유공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그렇습니다, 명칭상으로.

○윤창현 위원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5·18 법에 의한 보상도 받고 이쪽 보상도, 양쪽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받는 건가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보상 관련된 것은 현재로서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용하도록 돼 가지고……

○윤창현 위원 거기서 하고 있고.

그런데 국가유공자로 넘어왔잖아요,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러면 보상이 어떻게 되냐고?

○**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 오진영** 정책실장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5·18 유공자분들이 되는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분이 5·18과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소정의 보상 절차를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보상을 받으신 분이 보상받았다고 하는 공적인 증명을 우리 국가보훈부로 제출을 하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5·18민주유공자법에 따른 3개 유형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 그것은 현행이잖아요, 현행.

○**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 오진영** 그래서……

○**윤창현 위원**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묻는데 현행만 자꾸 얘기하면 뭐 해요?

○**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 오진영** 그런데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렇게 보상하는 절차 문제도 다 해결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약간 오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 글썄요,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됐을 때, 현행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개정이 됐을 때 뭐가 달라지냐고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현행대로 하면서 여기에 넣자는 내용이거든요.

○**윤창현 위원** 아니, 그러면 국가유공자로 포함시켜 놓고 아무것도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 오진영** 그런데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신체 상이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 기준하고 일반적인 보훈 대상자 기준하고 다르니까 그것을 다 감수하고 탈락되는 사람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윤창현 위원** 뭐를, 뭐에서 탈락됐다고?

○**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 오진영** 상이등급에서요.

○**윤창현 위원** 상이등급?

○**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 오진영** 왜냐하면 지금 광주광역시에 있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준 것은 14개 등급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13·14가 보훈등급 이외의 등급으로 볼 수 있는데……

○**윤창현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8등급 비슷한 거다 이거지요? 7 내에 안 들어간단?

○**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 오진영** 예, 그래서 76%가 탈락을 해도……

○**윤창현 위원** 그러면 그분은 그냥 5·18로 보상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 오진영** 그런데 그게 그렇게……

○**윤창현 위원**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는지를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 오진영** 아닙니다.

○**윤창현 위원** 그냥 뭐가……

○**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 오진영** 지금 이 법안의 내용은 국가유공자법으로 들어오게만 하고 나머지 보상에 관한, 그러니까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내용은 5·18민주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윤창현 위원** 보상은 5·18법으로 받고 이름은 국가유공자가 되고?

○**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 오진영**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체검사를 다시 해 가지고 탈락자가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이 변화된 상황입니다.

○**윤창현 위원** 탈락자들은 그러면 국가유공자법으로 탈락한 거지 5·18법 탈락은 아니잖아요?

○**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 오진영** 그렇지요.

○**윤창현 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냥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뭘 탈락이라고 그래요?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윤창현 위원** 얘기가, 개정안의 효과에 대해서……

○**소위원장 김종민** 잠깐만요, 잠깐만요.

○**윤주경 위원**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위원장 김종민** 잠깐만요!

○**윤창현 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뭘니까?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말씀하세요. 여러 분이 한꺼번에 얘기하면 토론이 안 됩니다.

○**윤창현 위원** 지금 법 2개 있는데 하나 여기로 들어왔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그랬더니 그냥 그 법 그대로 있고 이름만 바뀐다, 그러면 탈락한다…… 탈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받는 보상 그대로 받는다는데 뭐가 그게 탈락입니까?

○**소위원장 김종민** 국가유공자에 포함은 안 된다는 얘기……

○**윤창현 위원** 그러면 5·18법으로 다 받는데, 그것도 유공자인데……

○**소위원장 김종민** 원래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윤창현 위원** 달라지는 게 뭐가…… 이게 뭐니까?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위원장 김종민** 강민국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에다가 윤주경 위원님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차관님,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가유공자하고 5·18 민주유공자들은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실장님 설명은?

○**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 오진영** 아니요,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것이 광주광역시에 설치돼 있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받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게……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 거고.

그러면 이 법에서 좀 더 우리가 개정을 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하되 모든 심사와 명단 그것을 광주광역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부에서 하는 건 그것은 어떻습니까?

○**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 오진영**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광주광역시……

○**강민국 위원** 아니, 법은 우리가 지금 개정을 하면 되지……

○**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 오진영** 아니, 하도록 되어 있는 행안부 소관 법률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 되고 혹은 어쨌든 그 법률을 폐지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지금 국가유공자로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이용빈 의원의 법안에는 그런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이 법안은 지금 그거 한테 이 법안에다 저희들이 내용을 더, 정무위에서 더 그것을 보충을 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하되 심사와 모든 기준을, 보훈부에서 직접 명단과 모든 기준에 했던 것을 보는 건 어때요?

차관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 오진영** 개인적인……

○**강민국 위원** 아니, 실장님 잠깐 계시고 차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되면 어때요? 방금 윤창현 위원님 질의에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5·18 이 법을 조금 우리가 더 보충을 해서 그러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하되,

이용빈 의원 법안처럼 인정을 하되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의 명단 그리고 심사, 모든 그것을 국가보훈부에서 하는 건 어때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그렇게 하려면요, 아까 제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5·18민주화 보상에 관한 법이 행안부 법인데요 그 법을 폐지를 하고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예를 들면 사건마다 희생자분들이 5·18 이 맞는지 요건을 심사를 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 보훈 체계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이 정확하게 저희들 7등급 체계에 맞는지 등급 심사를 받아 가지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행안부하고……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재심사를 해야지. 법안이 만약에 국가유공자로 된다면 법을 더 보충하든 시행령으로 보충해서라도 재심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국가보훈부에서. 맞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예, 그렇게 하고……

○**강민국 위원** 제 말이 그 말이지……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혁신적으로 하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법도 폐지하고……

○**강민국 위원** 지금 있는 것은 단지 5·18민주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국가유공자로 하되 그러면 그 모든 심사와 기준에 했던 것을 보훈부에서 심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다시 한번 그것을…… 이제 국가유공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예,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서도 논의해 주시면……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지.

○**소위원장 김종민**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이것은 아까 윤한홍 간사님하고 간사 간에 잠깐 협의를 했는데 일단 이렇게 이용빈 의원 법안을 지금 의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소위 쟁점에서도 나왔듯이 어려운데 이 문제, 즉 5·18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편입시킬 거냐 말 거냐 하는 쟁점은 우리가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숙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빈 의원 입법만 가지고 우리가 토론해서 결론 낼 수는 없는 일이고 지금 강민국 위원 말씀 주셨듯이 국가유공자법 체계에 맞게 5·18유공자를 편입시키는

문제는 국가유공자법 체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정 방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국가보훈부가 한번 판단,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입법 판단을, 추가적으로 진도를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정도의 의견 교환이 있었거든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잠깐만 저도 마지막으로……

○소위원장 김종민 그래서 보훈부가 오늘 나온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을 해서 국가유공자법 체계에 맞게 5·18유공자를 편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약에 실행을 한다면, 그 필요성은 여러 번 인정이 된 거니까 한다면 어떤 체계상의 변화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주신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정리해 주는 걸로 그렇게……

○윤한홍 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까 보훈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상이등급 기준이 다르잖아요. 법체계를 정비한다……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용역을 주든지.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이런 이런 법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이런 법도 고쳐야 된다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됐을 때는 상이등급 기준이 기존 국가보훈 대상자하고 5·18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통일을 시켜서 가져가려면 기존 5·18유공자 중에 상당수가 탈락이 된다.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그렇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는 겁니다. 지금 현재 5·18유공자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때문에 못 받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훈부가 장기적으로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소위원장 김종민 재심사를 한다든가……

○윤한홍 위원 예, 해서 5·18유공자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 때문에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다 각 자치단체에서 가져와서 투명하게 하면서 모든 걸

정리를 해야 될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알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저도 한마디만 마저 할게요.

○소위원장 김종민 예,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 보훈부가 됐지요. 부가 할 수 있는 일은 4·19, 5·18, 부마항쟁 이런 걸 민주유공자라고 칭하면 전체를 어떤 식으로 법령 체계를 만들 것인지, 이것을 과연 국가보훈 대상으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부터 해서 모든 체계를 딱 정확하게 확립을 시켜 놓지 않으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매일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이 논쟁만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잘못된 게 처음에 4·19였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어쨌든 됐으면 다른 것도 다 함께 엮는 방법을 취해 나가든지 아니면 별도의 뭔가 만들든지 보훈부가 그런 명확한 정립이 없이 계속 끌려다니는 보훈부를 하면 후세대한테 욕을 들어 먹어요.

○소위원장 김종민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이것은 박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게 우리 국가유공자법상 민주 발전의 유공이 포함돼 있습니다, 항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4·19 이외의 다른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 요건이라든가 기준은 엄격하게 하더라도 그 기본 기준은 한번 재정비할 필요는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훈부가 국가유공자법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을 종합하는 그런 정리안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경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광주시에 갖고 있는 5·18유공자에 대한 모든 자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한다는 조항을 이 법안에 담을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렇게 해서 보훈부가 언제까지 이것을 정리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기한을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이게 또 계속 함흥차사야.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위원장님께……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 우리

한데 자료를 다 줘야지.

○소위원장 김종민 일정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 한데 나눠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부 법률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종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발언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00)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92)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2)

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0)

1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4)

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9)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4)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5)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3)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87)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0)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5)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30)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2)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0)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0)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9)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1)

26.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최재혁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63)

27.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불법 공매도 개선의 즉각 시행과 국회와 감사원의 금감원, 금융위, 한국거래소 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서경호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65)

28.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및 공매도 제도 개선 후 재개에 관한 청원(유형우 외 50,42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70)

2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2)

3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4)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770)
3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7)
3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9)
3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2)
3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9)
3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3)
3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60)
3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50)
3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3)
40.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56)
4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2)
4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3)
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1)
4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
4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
4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
4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
4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
4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
5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6734)
5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
5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6)
5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4)
5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0)
5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0)
5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2)
5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8)
5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
5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60.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80)
6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8)
6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
6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48)
6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8)

○소위원장 김종민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64항까지 이상 5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6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소위 자료 1쪽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소위를 1차로 했고요. 그때 대부분 개정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서 수정의견이나 통합의견 그대로 채택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추가 논의사항으로는 지금 자료 2쪽에 보시면

벌칙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송옥주 의원안인데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옥주 의원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행위로 인한 총 피해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 법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해서 벌칙을 대부분 상향 조정한 바가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정부 측……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의 의견입니다.

개정된 현행 법률의 시행을 지켜본 이후에 추가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강민국 위원 이것은 금융위 의견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6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12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 이상 3건의 공매도 개선에 관한 청원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일곱 쪽지를 간단하게 총괄

보고를 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의견을 한번 점검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자료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진·강훈식 의원안하고 청원 2건은 먼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산시스템 미이용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확인하여 차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21대 국회 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 경과라든가 도입 필요성 및 현실적 가능성 등에 대해서 고려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은 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인데요. 개정안은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에게 동일한 증권 차입조건, 즉 상환기간이나 담보비율, 이자율 등을 적용해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법안별 내용은 비교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현행 제도나 찬반 논거 등을 참조해서 이 차입조건 등을 동일하게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박용진 의원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보유잔고 공시의무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그 대상을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0.5% 이상인 경우에서 0.01% 이상인 경우로 변경해서 공시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고요. 이것도 찬반 논거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개정안과 청원은 3대 불공정거래 행위하고 불법 공매도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금융거래나 상장법인 임원 선임 제한 또는 차입공매도 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2쪽의 논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법 공매도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 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유죄판결 확정 전에 개인의 재산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최대 10년 동안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

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참조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개정안하고 청원은 불법 공매도와 3대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료에 제시해 드린 유사 입법례,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국 의원안은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계획 공시 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공매도를 한 경우에 해당 사채발행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주식의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CB와 BW 발행 시까지 공매도거래자의 참여 제한을 확대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와 금투협회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저희가 청원이 지금 3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청원 요청사항을 저희가 정리해 놓은 건데요.

두 번째 청원의 첫 번째 내용은 금융위나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서 개선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청원이 내용이 좀 많은데요. 그중의 첫 번째는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왜곡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폐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65쪽의 두 번째 사항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 해당 기간 주식을 보유한 주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68쪽입니다.

청원 세 번째 사항으로 단위 증권사의 특정 종목에 대한 1개월 내 2회 이상 적정 주가 발표 금지 및 적발 시에 당사자와 그 주변인 및 이해관계자의 금융계좌를 포함한 조사 및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71쪽입니다.

네 번째로 청원 5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공매도 금지를 즉각적으로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고요.

그 밑의 다섯 번째로 친인척과의 이해 충돌이 예상되는 금융기관장에 대한 임명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이 청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칙에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이상 7개 항목하고 청원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항목별로 정부 의견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정부 의견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첫 번째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날 발표한 실무 초안을 토대로 조속히 공론화를 거쳐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초안은 내부통제 차원의 전산화를 우선 추진하되 실시간 차단 시스템은 TF에서 다시 검토하려는 것입니다.

초안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내부 잔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의무화 또 공매도 수탁증권사의 전산시스템 확인의무 부과 또 위반 기관투자자나 증권사의 과태료 부과입니다.

한투연 등에서 주장하는 바는 증권사 등이 매도 주문마다 실시간으로 잔고 확인하고 무차입 공매도 해당 시에 차단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2020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아주 쉽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현재는 TF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의견 제기해 주세요.

○윤한홍 위원 지금 전산화 부분이 제일 핵심 아이템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윤한홍 위원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윤한홍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간 전산화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IT

관련해서 못 할 게 없는 이 마당에 그런 말씀보다는 일단 불법 공매도를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전산화 그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저희가 전산시스템은 확실하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윤한홍 위원 그렇지요?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중단시켜 놓은 거잖아요. 불법 공매도가 적발이 됐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래서 전산화도 저는 불법 공매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런 표현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소위원장 김종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갈까요?

○이용우 위원 한마디만……

○소위원장 김종민 예.

○이용우 위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 게 증권회사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게 전산시스템을 증권회사가 하는 것인지 거래소가 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각각 주체가 누가 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전산화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구축을 누가 할 것인지, 그러면 공매도 중개를 해 주는 중개기관이에요 아니면 거래소예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박민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법안들이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대상이 약간 다릅니다. 일부 의안에서는 회원사, 증권사들한테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가 발표하는 안은 당연히 내부자가 먼저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거기에 대해서 개념 정리부터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김종민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과 사회교대)

○이용우 위원 혹시 코로나예요?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려서 그래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코로나는 아니고 제가 감기인데요. 죄송합니다.

의무주체가 약간 법안별로 다른데 정부에서 생각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보유잔고 전산화 구축

의무를 매도자한테 먼저 부과를 하고요, 회원사는 그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라는 겁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 매도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자산운용사든지 투자자문사든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예, 통상적으로는……

○이용우 위원 그렇고, 그걸 중개하는 증권회사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는지 확인해야 되는 의무. 그러면 거래소의 의무는 뭐가 되나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만약에 모든 것을 중앙집중식으로 연결해서 거래소나 예탁원까지 실시간으로 거래정보를 결집해서 그것을 확인해서 공매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그런 콘셉트는 그때 얘기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용우 위원 제 말씀은 만약에 매도하는 기관 투자자가 있고 중개하는 증권사가 있고 종목이 있을 겁니다. 이게 불법 공매도인지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각각 종목에서 공매도 잔고 현황을 거래소가 집결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확인해 줘야지만 이게 불법인지 아니면 합법인지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 법안에 어떻게 담을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쭙본 겁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또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일단 법안이니까 불법 공매도를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그러면 그 법문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하는, 전산시스템이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동일한 목적으로 향해 가는 방법은 시스템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고 비용 문제 또 기관에서 부담할 것이냐 거래소에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재개되기 전까지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 구축할 것이다 하는 것을 금융위에서 안을 만들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요?

○이용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빠르게 전산화를 하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금융위…… 당연히 전산시스템 빠르게 해야 될 것이고요, 조기에 완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가 금융위가 약속을 못 지키면 전적으로 금융위의 책임인 거고,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책임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금융위의 책임은 어디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것 없이 ‘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했다가 6개월 지나 가지고 ‘아직 다 안 됐는데요, 뭐 때문에 못 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금융위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하시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럴 거예요,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 그런 취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허용하기 위해서라도 전산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부위원장님, 다음 설명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다음은 9페이지에 있는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입니다.

초안 잠깐 말씀드리면, 대차 상환기간을 무제한에서 90일 플러스 연장 가능하게 해서 대주와 동일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대주 담보비율을 120% 이상에서 105%로 내려서 대차와 동일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론화를 해서 추가적인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 지금 정부안이 뭔데요? 법안을 이렇게 내놨으면 정부안은 뭐다라는 게 있어야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11월 16일 날 초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제가 초안을 말씀드린 건데,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차와 대주를 가능하면 가장 비슷하게 만든 안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대차 상환기간은 무제한에서 90일인데 연장 가능하게, 그게 현재 대주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맞추는 것 그다음에 대주 담보비율을 120%에서 105%로 대차와 동일하게 만드는 그런 초안을 일단 11월 16일 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용우 위원 질의의 요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것을 기초로 해서, 적혀 있는 것을 보세요. 최종적인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방안에 대해서 추가 검토, 공론화가 필요하다. 어떤 방향으로 할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저희가 어제 토론회를 했었고요,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하면서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오늘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박재호 위원 우리가 법안을 이렇게 냈고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 의원님들 안하고 종합해서 우리가 이 정도가 좋겠다라고 할 건데 정부는 만년 ‘공론화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안 만들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오늘 법안심사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 안으로 가 버리는 게 맞지.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핵심이 이거예요. 담보비율을 똑같이 한다. 그러면 기존에 몇 %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기존에 담보비율이 대차가 105%였기 때문에 대주를 같은 105%로 동일하게 맞추는 거고요.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상환기간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상환기간은 대차가 무제한이었는데 90일인데 연장 가능하게 하면 대주랑 정확히 똑같은 상태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개투는 상환기간이 얼마였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대주는 90일, 90일인데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90일. 기관은 90일 플러스 연장 가능?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대차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90일 플러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그거잖아요. 연장을 금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 아닙니까? 그것만 딱 포인트 찍어서 여기서 논의를 하면 되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정의를 보시면 똑같이 맞추자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개인이 90일 연장 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0일인데 또 90일씩 계속 연장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용우 위원 한 가지 확인차 할게요.

그러니까 대주거래는 만기가 90일이고 연장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이용우 위원 대차거래는 만기가 무제한이 아니고 만기가 없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없습니다.

○이용우 위원 국제 대차거래 시스템에 의하면 만기가 없다는 것은 만기가 무제한일 수도 있지만 다음 날일 수도 있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리콜 가능하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이용우 위원 대차계약서 일반계약서 보면 상환을 요구하면 T+2일 내에 상환에 응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이용우 위원 제발 그런 사안 자체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하세요. 만기가 무제한이라는 말하고 만기가 있다 없다 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용어 자체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심의를 해야지 안 헛갈려요.

○박재호 위원 그러면 개투도 그렇게 해요?

○이용우 위원 개인투자자도 대차거래 시스템으로 하면 T+2일 내에 리콜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현재 발표한 저희 안은 대주서비스인 90일 연장으로 대차거래를 맞춘다는 거고요. 지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차거래의 경우에는 만기가 없는 대신에 언제든지 리콜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대주서비스는 90일간에는 리콜을 못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치대로 대차를 맞추겠다는 거였습니다.

다만 기관의 경우에는 거래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계약 조건을 통해 가지고 리콜 가능성은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당초의 안이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또 다른 위원님……

그런데 개인투자자들 요구 사항은 뭐니까? 그냥 90일로 일회성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연장을 무한정하게 해 달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연장을 한 번만 해 달라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기본적으로 지금 청원에 제기된 것에는 연장 금지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러니까 연장 금지 아닌가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예,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런데 연장을 그냥 계속해 주면 무한정 연장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불리하지 않아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개인투자자들도 현재는 연장이 가능한데 개인투자자들은 연장을 하면서 기관들은 연장을 못 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아니, 그게 아니지요. 다 같이 못 하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차거래가 단순히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올 어떤 파장이라든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금 더 파악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러면 이 부분은 아직 결론 안 나는 거다.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일단 두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보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18페이지입니다.

공매도 공시 강화입니다. 찬성 의견이지만 법체계 감안 시에 시행령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시행령에서 기준을 규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확대하되 시행령에 반영 하겠다 이 뜻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지요.

다음 몇 페이지지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21페이지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21페이지,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등 행정제재 수단 다양화입니다.

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에 대한 행정제재를 다양화하기 위한 계좌 지급정지, 자본시장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도입에 대해 모두 동의합니다.

하지만 박재호 의원님 안의 계좌 지급정지에 대해서는 절차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 의견이 있어 현재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자본시장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도입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제재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창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하태경 의원안은 차입 공매도의 영구 금지가 과도하다는 비판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강병원 의원안은 유죄 확정 판결 이후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제재의 적시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융투자상품 처분명령 위반 또는 임원 선임 제한 대상자 해임요구 불이행에 대한 형벌은 과도한 제재라는 법무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통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사실 불법 공매도를 한 행위자에 대해서 행정제재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금융위 의견이 지금 애매해요, 말씀하시는 것 보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애매하지 않고요. 계좌 지급정지……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좀 명확하게 금융위 의견은 이렇다고 아이템별로 적시를 해 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법안 논의가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윤창현 의원안 위주로 해서 금융위 입장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일단 박재호 의원님 안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추후에 정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걸 꼭꼭 항목별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계좌 지급정지 관련해서는 법무부랑 협의가 진행 중이니 더 천천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러면 계좌 지급정지는 지금 반대다 이런 뜻의 말씀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당장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협의가 안 됐다. 반대다. 지금은 안 된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다음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자본시장거래랑 임원 선임 제한 도입이 있는데 여러 분이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중에 윤창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러면 윤창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가자는 건 윤창현 의원안을 수용한다는 얘기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렇게 표현해 주셔야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그다음 마지막으로 의견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처분명령 위반이나 또는 임원 선임 제한 대상자 해임요구 불이행에 대해서 형벌 사항이 있는데 이게 과도한 제재라는 법무부 의견이 있어서 형벌 대신에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런 부분이 같은 의견입니다.

○박재호 위원 부위원장님, 불법 공매도 적발이 이때까지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된 건지 압니까? 몇 년 기간이 지나서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나면 거래는 다 끝났고……

그리고 맨날 법무부하고의 관계가, 법무부는 월권이나 저희한테 체계에 안 맞으면 하지 말자는 건데 피해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금융위가 법무부에 한 번 더 의견을 개진하고 해 봤습니까? 법체계에 맞다, 안 맞다……

가중처벌을 하는 것도 얼마 전에 우리가 만들어 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피해자는 돈 하나도 못 찾고 해 먹은 사람은 계속 해 먹고, 임원 선임 끝나고 나도 계속해요. 그리고 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법무부한테, 최근 들어서 가중처벌되고 금융사기가 얼마나 큰지 알지요? 이런 문제를 설득시켜서 오히려 이런 법을 더 강화시키는 게 금융위원회의 입장이지 금융위원회가 걸핏하면 법무부 의견에 안 맞아서, 그러면 지금 현행법대로 하면 하나도 잡을 것 없어요. 전부 다 풀려나서 주식 그것 한 친구들은

다 땡땡거리고 더 잘살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법을 시행할 때는 법무부한테 더 상세하게 피해 사례를 보여 주면서 ‘이래 돼서 이렇게 됐다. 이래서 불법 공매도 문제만큼은 확실히 잡아야 일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위원, 김종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동의하고요. 가능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소위원장 김종민** 예,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지금 저는 참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게 금융위가 ‘불법 공매도 근절을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6개월 내에’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하셨으면, 청원도 있고 법안도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서 금융위가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와야 우리가 법안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앞의 몇 개 항목에 대해서 ‘공론화를 해 보겠습니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법안 심의를 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개인투자자들의 많은 원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급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게 금융위의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법안 심사를 하고 나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정부는 하려고 하는데 위원들이 방해해서 안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금융위가 저런 태도를 보이는데 이런 상태로 법안 심의를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 들기 때문에 금융위가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확실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지금 이용우 위원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여당 간사님하고도 현장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든지 빨리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 대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이 사안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책임 있는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입법이 진도가 나갑니다. 개별 의원들 발의안만 가지고 심의를 해서는 이게 결론이 잘 안 나요.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것 안 된다. 이것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판단 가능한 건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이것은 좀 시간이 필요해서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건 빨리빨리 좀 가르마를 타 주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위원** 위원장님, 이 법안이 오늘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되는 법안입니까?

○**소위원장 김종민** 꼭 통과시킬 필요는 없는데 이게 지금 현안이 돼 있으니까.

○**박재호 위원** 현안이 돼 있는데, 지금 금융위에서 자기 입장이 하나도 없는데 의논하면 뭐 합니까?

○**소위원장 김종민** 저도 그걸 몰랐지, 있을 줄 알았지.

○**윤한홍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하나 드려 볼게요.

부위원장님, 법률로 규정이 안 돼도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화는 할 거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윤한홍 위원** 그다음에 담보 비율을 똑같이 하겠다 이것도 법률이 지금 개정이 안 돼도 그렇게 할 거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법률로 필요한 게 지금 뭐냐 하면, 처벌 강화는 법률이 들어가야 처벌이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처벌 강화는 법률에 필요합니다.

○**윤한홍 위원** 법률이 필요한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윤한홍 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보니까 금융위가 지금 공매도를 금지시켜 놔잖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윤한홍 위원** 굉장히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아닙니다. 맞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할 때까지 금지하겠다 그런 취지로 가면서, 이 조건들이 해소될 때까지는 공매도를 풀지 않겠다 하면서 가게 된다면 이 법률에서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처벌 강화가 법률로 들어가야 처벌이 강화돼요. 나머지는 법률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90일 해 놓고 연장을 할 거냐 말 거냐, 90일 조건을 똑같이 뒀지 않습니까? 주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개인하고 기관하고. 맞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똑같이 했습니다.

○**윤한홍 위원** 90일로 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90일 플러스 연장입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연장에 대해서 개인과 기관이 서로 합의가 되느냐 이걸 내가 물어본 것 아닙니까, 아까 전에. 만약에 법률이 아니더라도 금융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냐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전산시스템 구축……

○**윤한홍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상환 기간 연장 말이에요. 90일 플러스 연장이, 연장을 해 줄 거냐 연장을 금지시킬 거냐 그게 법률과 관계 있느냐를 이야기해 보라고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법률과 관계가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있어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예, 그러니까 대차 기간을 법률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윤한홍 위원** 법률로?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예.

○**윤한홍 위원** 그러면 90일로 똑같이 맞추고 연장을 하는 것은 법률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아니, 계약 기간 조건을 같이 하는 것도 대차 거래에 있어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원래 적용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리이러한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법에서 명시해 줘야 됩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연장 없이 90일로 딱 끊는 것도 법률이 필요하고 90일 플러스 연장을 하는 것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동일하게 맞춰야 된다고 한다면요.

○**윤한홍 위원** 그러면 공매도를 지금 금지시켰는데 다시 재개하기 전까지는 이 법이 통과돼야 어쨌든 결론이 난다는 얘기네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예, 전산시스템 의무화도 그렇습니다.

○**윤한홍 위원** 아니, 전산시스템 말고 지금 90일 연장 이것 물어보잖아요. 전산시스템은 구축하면 되는 거지요. 법률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그러니까 그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의무화를 통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제재를 할 수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내가 벌칙 말하는 것 아니에요, 벌칙을 말하는 게 그런 뜻인데. 상환 기간을 90일로 하고 연장을 할 거냐, 상환 기간을 90일로 하고 연장을 안 해 줄 거냐 하는 것은 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예.

○**윤한홍 위원** 그러면 공매도 금지를 그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한동안 계속 금지시켜야 되겠네요.

○**이용우 위원**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관 간 개인 간에 거래를 하고 계약 기간, 만기 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사적 자치기 때문에 법이 없어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 제한을 초과하는 계약을 하거나 이런 건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그렇게 민법상의 자유로운 사적 자치를 존중하는 곳에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 조건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의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양자를 동일하게 하겠다 아니면 만기를 어떻게 설정하겠다는 걸 제한을 두려면 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공매도를 금지시킬 때 이런 걸 개선하겠다고 했잖아요, 금융위가. 그렇지요? 그러면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매도를 금지시켰으면 그 제도를 빨리 법률에 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다만 너무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약간 더 조심스럽게 천천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언제 우리한테 금융위 의견을 줄 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다음번 법안 소위까지는 저희가 확실히 가져오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리고 전산화도 여러분이 아까 제재를 안 하면, 전산화를 권유해도 법에 제재 규정이 없으면 전산화 안 한다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해요. 금융 주식 거래시스템에서 어디는 전산화를 하고 법이 없어도 불법 공매도를 자기들은 안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A 증권사는 법이 없으니 전산화 안 하겠다, B 증권사는 거래소하고 연결해서 전산화하겠다.

그러면 전산화 안 하는 증권사는 불법 공매도 하겠다는 걸로 간주하면 그것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힘이 센 금융위원회에서 그럴 때는 왜 꼬리를 살 내려고? 여러분들이 증권회사나 금융기관에 얼마나 파워가 센데 그럴 때는 또 답변을 꼬리를 살 내리고 이야기를 하네. 법이 없어도 여러분 말 한마디면 금융기관들 다 돌아가잖아요. 왜 그럴 때는 꼬리를 내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제안할게요. 법률안을 금융위 의견을 담아 가지고, 아이템 몇 개 안 돼요. 지금 아이터 몇 개 안 되잖아요. 전문가 이용우 위원도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지만 꼭지가 몇 개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융위의 의견을 확실히 담아 가지고 가져오세요.

그리고 지금 공매도가 금지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매도를 다음에 어느 시점에선가 풀어 주기 위해서는 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산화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해 놓고 풀어야지 그걸 안 해 놓고 세월 지났다고 풀 겁니까? 그건 못 풀어요, 여러분들.

○소위원장 김종민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금융위가 조금 더 정리된 의견을 책임 있게 정리를 해 오셔서 법안 심의를 이어 가도록 하고 그런데 불법 공매도 처벌에 관한 조항은 지금 이견 없으면 오늘 이것만 별도로 의결을 할까요, 아니면 다 같이 다음번 소위에서 할까요?

○윤한홍 위원 그 법 하나라도 일단 해 놓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김종민 의견들 어떻습니까?

○윤한홍 위원 어떻습니까, 다음에 할까요?

○소위원장 김종민 처벌 조항만 일단 여기서 의결을 좀, 그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박재호 위원 처벌 조항은 법무부하고 계속 조율을 하는데 안 된다 된다 하는데 자기들 의견을 한번 포집해 보고 갖고 오라는 게 더 낫지요.

○소위원장 김종민 지금 금융위에서 처벌 조항 관련해서는 법무부하고 여기에 대한 확인이나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까?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현재 협의 중이고요. 처벌 조항은 뒤에, 아직 논의를 안 하셨는데 지금 안들의 처벌 수준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박재호 위원 의원들 안은 그렇게 내고 금융위

안을 알아 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강화할 수 있다라고 딱 안을 갖고 와야 일이 될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그 처벌 조항도 사실 여기 내용이 다양하거든요. 금융위가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해야 논의가 좀 정리가 돼요. 이 개별 의원들 발의안 가지고 논의를 하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준비를 해 오셔서 다음 소위 때 논의를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12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 이상 3건의 공매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 이상 2건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개정사항이 2건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이용우·양정숙 의원안 제2조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구성 요건인 자금 조달 행위에 가상자산 조달 행위를 포함시키고 원금 보장에 가상자산 가치 보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자금 조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가상자산이 자금에 포함되지 않아서 유사수신행위법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

3쪽의 고려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가상자산 발행업이나 스테이킹 등은 신고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개정안에 의할 경우에 스테이킹이나 ICO, DeFi 등 관련 행위가 금지될 수 있고 이용자들이 규제가 미적용되는 해외 서비스로 이동해서 규제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규율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을 감안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고려사항 두 번째로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무부 의견이 있습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의원안 제5조, 8조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서 상호 중에 가상자산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고려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현행 특금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할 뿐이지 가상자산업에 대한 규제 체계는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상자산업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2단계 입법에서 같이 논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부칙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정부 의견 얘기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지금 배포한 저희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제가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정부 측 의견 먼저……

○이용우 위원 이 의견이 나오게 된 계기가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원안에 보면 수석전문위원이 스테이킹이나 ICO, DeFi까지도 규제될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의원실에서 금융위하고 FIU 그리고 가상자산업체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만든 수정안이 지금……

○소위원장 김종민 지금 배포한 거예요?

○이용우 위원 배포한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이것에 대해서 의견 얘기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법체계상 정합성 제고를 위해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신고의 범위에 특금법에 따른 신고가 포함된다는 점이 불명확하나 수정의견

에서는 미신고의 범위에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업자의 신고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를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 정하고 있으나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은 금년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에 수정의견에서는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의 정의에 따르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배포해 드린 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 부칙 제2조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까지는 현재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정의를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세 번째, 개정안에서는 유사수신행위로서 제2조제5호에 신설하고 있으나 이 경우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행위는 제5호만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의견에서는 안 제2조제5호를 삭제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의 유형이 제2조 1호 내지 제4호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일은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얘기해 주세요.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 이상 2건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위원장님, 잠시만요.

○소위원장 김종민 가상자산 유사 상호 사용 금지 여부 관련해서 7페이지 양정숙 의원안 중에 거기에 고려사항에 나온 내용 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양정숙 의원안에 반대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가상자산사업 내지 가상자산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개별 업권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금융업이 돼 있는데 양정숙 의원안 보시면 금융업 또는 가상자산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사업 부분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이용우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가상자산산업법 관련해 가지고 했을 때 1단계, 2단계로 나뉘고 1단계에서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고 가상자산업 자체에 대한 것도 2단계로 논의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가상자산업으로 들어오는 순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2단계에서 법안 심의를 할 때 같이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서 금융위 안처럼 이걸 빼는 게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2단계 입법으로 지난번에 어느 정도 합의는 했으니까요. 그렇게 합시다.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 이상 2건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자료 1쪽에 보시면 지난 소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정리해 났는데요. 그때 저희가 수정의견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으셨고요. 다만 최소투자비율이라든가 금전 대여 부분 그다음에 펀드의 차입 그다음에 이해상충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오늘 다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에서 수정의견 등을 보고받으시고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금융위 얘기해 주세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저희가 배포해 드린 수정의견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주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최소투자비율 관련입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주 투자대상 최소투자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원안에서는 40%였습니다.

금융위 의견입니다.

현행 공모펀드나 다른 벤처투자기구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투자비율 중 가장 높은 비율인 50%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에 동의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전대여 관련입니다.

벤처대출의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융위 의견입니다.

벤처대출 허용 시 대출한도 제한, 집합투자계약 사전기재, 여신심사시스템 정비 및 대출 공시·보고 등을 통해 건전한 관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차입 관련입니다.

차입 시 투자 리스크가 확대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융위 의견입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자금 차입을 불허하는 것으로 수정에 동의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공모펀드와 동일한 규제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운용·판매 겸업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 관련입니다.

증권사를 BDC의 인가 대상으로 할 경우 판매와 운용의 겸업에 따른 다양한 이해상충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금융위 의견입니다.

증권사는 우선 인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도를 출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가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산투자 규제 관련 사안입니다.

BDC의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이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금융위 의견입니다.

당초 개정안에 완화된 분산투자 규제가 아니라 일반 공모펀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분산투자 규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대통령령에 필요한 운용규제를 추가할 수 있는 위임규정 마련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5페이지입니다.

펀드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금융위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벤처투자 전문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가하고 전문성이 낮은 경우 인가 조건 부여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 부족 시 인가 불가 원칙이나 한시적으로 전문성 있는 자문업자의 자문을 인가 조건으로 부여하고 전문성 확보 시 독립적 운용하도록 하는 인가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얘기해 주세요.

○이용우 위원 몇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BDC도 일종의 펀드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예.

○이용우 위원 만약에 이게 펀드면 환매를 요청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려면 순자산 가치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요.

지금 기술특례 상장 심사를 받은 회사 자체도 보면 계속 적자가 발생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예.

○이용우 위원 그런데 이 투자 대상이 기술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거래소의 상장 심사도 거치지 않은 스타트업입니다. 그 스타트업에 대한 신용평가, 투자를 할 때 그 회사의 가치가 얼마일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기구가 있습니까?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펀드는, 그런데 폐쇄형이지 않습니까?

○이용우 위원 폐쇄형이고 또 상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평가하고 상장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의 가장 큰 아레스캐피탈 BDC 그다음에 블랙스톤 BDC 같은 걸 봤어요. 그리고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NAV가, 그러니까 순자산가치가 얼마인지 나온 자료들이 쪽 있는데 봤더니 대부분이 신용평가가 가능한 회사 그리고 보험사 매출채권에서 평가가 가능한 그리고 그 평가도 제삼의 기관, 평가사에서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그걸로 NAV를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DC를 허용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스타트업하고 전혀 다르게 운용하고 있다 이런 상태인데 왜 지금 이걸 이렇게 서두르시지요?

이게 어쨌든 투자자,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잘 크고 거기의 과실을 일반인들도 먹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기업 대출을 하게 되면 신용평가라든가 신용등급이 나오고 뭔가 생태계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장이 아닌, 상장된 경우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 이전에 스타트업 단계의 밸류에이션을 누가 할 거냐, 그 평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채 이런 일들이 도입됐다가 실제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시지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자본시장국장 박민우입니다.

위원님께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크다고 하는 지적 저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 평가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장 전 단계에서도 보통은 기술신용평가(TCB)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가지고 사실 그런 것들이 대출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상장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기업들에 대해서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만약에 이것을 그냥 아예 불허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이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유동성이, 나가고 그래서 벤처업계에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이클(vehicle)을 만들어 주고자 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투자자 보호가 더 큰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예전에 저희가 P2P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크라우드펀딩 시에도 그러한 문제가 사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한도를 규정을 해 가지고 한 사례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우 위원 그런데 보시지요. 신용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아까 스타트업 활성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신용평가를 하고 일정 정도 규모에 있는 회사, 그런데 이것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는 그 이전 단계의 회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그 이전 단계의 회사는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대부분의 경우인데 이제 그런 규제를 도입을 하자, 평가를 하고 밸류에이션을 하자, 좋습니다.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문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될 거고요.

또한 저는 이것 굉장히 이상한 의도가 보여요. 뭐냐 하면 스타트업에 투자했던 벤처캐피털이 지난 사오 년간 제대로 상장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에 맞춰서 이 기구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밸류에이션으로 팔고 그걸 일반 고객들한테 넘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엑시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실제 보면 지금 스타트업계에서 돈이 모자란다 이런 뜻을 보면 자신들이 엑시트를 할 방법이 없는 상태인데 이 엑시트를 할 비이클로 예전에 투자했던 걸 일반 고객에게 넘길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는 좀 더 신중하게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이용우 위원님이 말한 식으로 활용은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꼭 금지되어야 되는 건지는 또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벤처투자조합이나 사모창업·벤처 전문이 요즘 잘 안 돼서, 신규 조합 결성도 안 되고 엑시트가 안 돼서 또 자금이 묶여 있어서 불편해하는 투자 조합원들도 꽤 많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BDC가 그렇게 비상장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묶여 있는 분들에게 대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BDC 쪽으로 투자 자체가 손바뀜되는 것도 저는 꼭 나쁘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용우 위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큰 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는 거거든요. A라는 조합에 묶여 있다가 B로 넘어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BDC는 일반 투자가 그러니까 조합에 투자했던 나름대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 개인들의 상품으로서 폐쇄형이라도 넘어가는 거거든요. 일반 투자자한테 넘어갈 때 이 밸류에이션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 문제가 없으면 정확하게 잘 모르는 일반 투자자한테 넘어갈 수가 있다.

최근에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굉장

히 큰 것 중의 하나가 홍콩발 ELS거든요. 그 ELS도 일반 은행 개인 고객한테 예전에 금리가 한 1%, 2% 할 때 ‘ELS 옵션을 매도한 상품이지만 4~5% 나옵니다, 안전합니다’ 이런, 그냥 일반인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이 넘어갈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권리·의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제도 도입이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차관님, 이런 상품 자체가, 일반 투자자들이라고 하지만 고배당 금융상품에 대해서 사실 그분들은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투자하는 것 아닌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리스크가 고위험 상품일 가능성이 있는데……

○강민국 위원 어차피 그것 고배당 금융상품이라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인식할 수 있는 분한테 팔면……

○강민국 위원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잘 감안해서 이것은 사실 지금 미국 BDC도 그렇고 벤처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런 부분은 이용우 위원님의 의견을 좀 받아들이고 해서 이 법은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추가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허위 평가가 돼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자산운용사 회계감사인 신탁업자는 제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게 지금 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윤한홍 위원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또 ELS 같은 사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아닙니다.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금 제재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법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나는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지만, 정부에서 이 법이 지난번에도 한번 심의가 됐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여러 번 됐습니다.

○**윤한홍 위원** 여러 번 됐고 많은 수정도 거쳤고 또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이 돼 있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초안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안전해졌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이 정도는 해 줘도 되지 않나 싶어요. 안 그러면 우리 21대 국회에서는 그냥 이거 못 하는 걸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용우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특히 규제 완화에 대해서, 아까 P2P 대출 이야기를 하셨는데 P2P 대출 같은 경우도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당시 은성수 위원장이 새로운 비이클로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모펀드 규제 완화도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위험한 것은 국회 임기 말에 이러한 리스크가 있는 법을 했다가 그것에 대한 책임들 누가 집니까? 고객이 집니다. 투자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애시당초 이 법 자체 논의를 할 때 제가 제조, 판매 문제라든지 평가를 가장 중시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규제하고 책임을 지게 하겠다. P2P 대출 해서 깨진 거 누가 책임졌습니까? 누가 책임졌습니까?

○**강민국 위원** 국장님이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줘요, 어리버리하지 말고.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투자자가 명확하게 공시가 되고 설명이 된 상태에서 투자한다면 당연히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험하니까 아예 그런 것은 상품화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투자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줄 거냐라고 하는 것의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우 위원** 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ELS 사태도 있었고 사모펀드 DLF 사태도 있었고 제가 계속적으로 국정감사와 지적했던 사항은 이거였습니다.

옵션을 매도하는 위험한 상품의 경우에 개인한테 팔지 말고 적합한 기관 투자자나 리스크를 알 수 있는 사람한테 파는 게 적합하다. 즉 이런 상품의 경우에도 대상이라든지 리스크를 누가 질 건지 그다음에 적합한 사람이 누군지 투자자 대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적합하지…… 금융상품이 사고가 나고 했던 많은 부분들이 보면 고위험에 적합한 투자자라고 하지만 실제 현상은 그렇지 않은 쪽으로 벌어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국 위원** 이거 여러 번 의논하고 오늘 수정의견이 올라온 거 아닌가?

○**소위원장 김종민** 금융위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 가지 수정의견을 나름대로 그동안의 논의들을 반영해서 만들어 오셔서 좀 합리적이라고는 보는데 지금 이용우 위원이 제기한 문제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결국 투자 대상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투자 대상을 은행 신용평가가 가능한 대상 기업으로 한정해서 규정하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지금 현재 안에도 시행령에 저희가 반영을 할 사항이 연 1회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을 당연히 제삼자가 같이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반기마다 집합투자재산 평가를 해서 자산운용사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신탁업자가 또 그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건 하는데 법에다가 그 조항을 하나 집어넣는 방법은 없나? 투자 대상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명료한 어떤 표현을.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현재 공모펀드는 분기마다 펀드의 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액이 기재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법 88조가. 그것을 별도로 좀 더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행정실과 협의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은행 신용평가 가능한 기업을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 하자 이런 취지가 반영되는 걸 조금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주시지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그런데 은행의 영역으로 신용평가 대상으로 하시게 되면 이 BDC의 취지가 결국은 은행들이 대출을 잘 못 하거나 아니면……

○**소위원장 김종민** 오케이. 그것은 맞는데 하여간

그런 취지가 담길 수 있는 표현이나 규정을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세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사례의 부작용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것도 금융위가 이해를 하지요? 그래서 이용우 위원님이 당연히 걱정하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벤처 투자나 모금 제안 투자나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이런 걸 좀 모아 주면 사회가 또 새로운 동력을 일으키겠지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위험 이야기를 안 하고 개인투자자한테 받으면 나중에 그분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더라.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금융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뭐든 제도를 하나 만들 때마다 그런 걸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충분히 시대에 맞게 금융의 변화를 시켜야 되지만 거기에 오는 부작용이 너무 컸다…… 선작용보다 부작용이 더 크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어떤 제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 때 조금 전에 위원장님 이야기했을 때 충분히 고지시키고, 뭐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그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충분히 고지가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시행령에 연구를 하든지 이런 것을 안 해 주면 이것은 진짜 권유에 의해서 또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나이든 은퇴한 사람들 돈 좀 갖고 있는데 그런데 넣어 가지고 나중에 사기 당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더 연구해서 시행령에 딱 넣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불완전판매에 대한 그것은 이미 여러 차례 다 돼 있잖아. 법적 대비 장치가 다 돼 있잖아. 그렇지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예.

○강민국 위원 금융권에서 일반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그것을 하고 있는 거고, 보니까 여러 분산투자 규제 또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이 일반 공모펀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고 돼 있는 건데, 일반 공모펀드하

고 동일화해서 투자자에 대한 리스크도 그렇게 저는 크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금융이라는 속성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하이 리턴을 받기 위해서는 하이 리스크를 쥐고 간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 금융의 본질을 거슬러서, 우리가 자본주의의 속성을 거슬러서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해서 저는 이 법이라도 빨리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한홍 위원 두 분 걱정하시는 것 시행령에 담도록 부대의견으로 달고 하면 안 될까요? 아니, 뭘 그렇게……

○이용우 위원 시행령으로 될 수 없는 게 이게 스타트업에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아까 은행에서 못 하기 때문에 채권이나 이럴 때 신용평가사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미국 경우에는 피치에서 레이팅(rating)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팅이 발생하지 않는 스타트업은 아예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활성화 시키겠다는 타깃하고 실제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BDC가 선진국에서 잘된다고 하는데 그 용어만 가지고 왔지 그 밑에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논의를 하고 심도 있게 해야 될 문제이지 이 상태에서 하기는 어려운 법안이에요.

○소위원장 김종민 아니, 그런데 이용우 위원님, 그런 것에 대한 뭐 대안이 있어요? 문안이 있습니까,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이용우 위원 이 법안은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안은 없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법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법을 만들려면 다른 조항을 넣어서 하게 하든지 해야지, 법 자체를 그러면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소위원장 김종민 이 법안에 대해서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지금 여기 수정의견으로 금융위에서 제안한 내용이 그동안에 우리 소위에서 꾸준히 하게 문제 제기된 내용을 거의 다 수용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 때문에 또 안 된다 이래 버리면 우리 위원회가 이 법을 어떻게든

지 막거나 발목을 잡는 형태가 되는데……

저는 모든 법이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특히 이런 투자 관련 된 문제에서는 쉽지가 않다고 보고. 저는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게 지금 정부가 이 벤처 투자와 관련해서 정책금융 주도의 벤처 자금 운용계획을 전체적으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바꾸었어요. 저는 이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다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이 안 좋아요. 지금 투자 촉환기라고 불리는 코로나 이후에 자금 촉환기에 그나마 공급해 준 정책금융조차도 뭔가 소극적으로 변해 버리고 예산도 줄고 그런 상태에서 민간 투자 재원 조달은 뭔가 준비가 덜 돼 있고, 사실 정책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정책금융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한들 이게 먹히지는 않을 거고 빨리 민간 분야의 이런 벤처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인프라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정책 방향은.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하냐? 뭐 가본 길이 아니니까 위험할 수는 있겠는데 어느 정도 위험하냐는 판단에서 그동안 이용우 위원님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반영도 많이 됐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제안했던 투자대상에 대한 문제 제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또 일리는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고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한번 거기에 대한, 시행령 수준에서 집어넣을 수 있는 대안이 됐든지 아니면 법문으로 반영할 대안이 되는 게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회의 전까지 정리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논의를,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장 김종민 예.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민우 저희 안 4페이지에 보시면 5번 수정안에, 제일 마지막에 추가 신설된 게 공모펀드 수준으로 100분의 10 이하로 하면서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 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한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해 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모든…… 저희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용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 정부안인데 그것에 따른 모든, 나중에 갔을 때 불완전판매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책임을 막중하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많이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고요.

그래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지적하시는 모든 사항들을 다시 한번 반영하고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주시면 그 대통령령을 상임위에 보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렇게 합시다.

아니, 금융위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 호주머니 털려고 만드는 그런 법도 아니고 또 우리……

○소위원장 김종민 일단 이렇게 하세요.

○윤한홍 위원 지적된 게 거의 다 반영이 됐어요. 100% 반영됐어요, 지적한 게.

○소위원장 김종민 이런 문제 포함해서 오늘 회의 전에는 의결을 할 테니까 일단은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고 다음 안건 진행하다가 우리 회의 마치고 전에 다시 한번 최종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및 제33항, 이상 2건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법안은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소위에서 한번 1차 논의가 있었고요. 자료 1쪽에 정리해 놓은 바와 같이 주요 논의사항 해서,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추가 논의사항을 저희가 정리해 났고 이것 관련 해서 금융위원회 보고 받으시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의견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금보험제도 전반과 연계 관련해서 금융위 의견입니다.

금융안정계정 설치의 필요 여부는 별개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보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고 보호한도, 목표기금 등 예보제도에 영향이 없게 할 예정입니다. 정상 금융회사만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손실이 없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국, 독일, 스웨덴 등 해외 운영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융안정계정 활용을 위한 별도의 재원 마련 관련해서 금융위의 의견입니다.

금융안정계정은 재원을 사전에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상 금융회사만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운영 과정상 손실보다는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재원을 미리 적립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실제 운영하는 시점에 재원을 조달한 후 사후적으로 해당 업권 내에서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설계·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존의 시장안정조치와 금융안정계정과의 관계 관련해서 금융위 의견입니다.

지원대상, 신속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 시장안정조치와 차별화되고 포괄성·신속성 측면에서 기존 조치를 보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은·증금 유동성 지원은 적격담보가 필요하지만 금융안정계정은 담보가 불필요하고 대규모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국은행도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상황에서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채무보증, 대출 등의 조치를 활용한다면 금융의 중개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금융안정계정의 상설화 필요성과 관련해서 금융위 의견은 금융위기의 상시화 및 선제적 대응 필요성 등 감안해서 상설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금융안정계정 도입 관련해서 금융감독원 의견

입니다.

공식 정부 입법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이견이 없었고 그 아래 금감원 의견도 정부안에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금융안정계정 활용을 위한 국회 승인절차 필요성 관련해서 금융위 의견입니다.

금융안정계정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회 사전승인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강민국 위원** 금융안정계정은 저는 신속하게 도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 처음에 채권 매각 손실에서 또뱅크런이 났다가 폐쇄가 되고 이러면서 참 사실 금융위기가 순식간에 최고조로 올라왔는데 사실 금융위기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국민적 피해 수준이 발생하고 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선제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전부터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예전에 내가 김종민 위원장님하고 실리콘밸리도 갔다 오고 우리가 그때 검토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그런데 어떻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에서 예보기금 손실 및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EU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 저는 약간 비교적으로 보고 있는데,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윤영은** 구조개선정책관 윤영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도입을 했고요, 그중에서 재정 투입이 없는 방식으로 저희도 도입을 하자는 취지이고 그동안의 추진 실적 과정에서는 대체적으로 정상 금융회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체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금융안정계정의 도입에 따라서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외에 금융이 일부 안정이 되고 나서는 사회적인 안정 시스템적으로, 말하자면

선제적인 지원 효과가 있어서 이 시스템 도입 자체가 주는 효과 때문에 또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강민국 위원 SVB 사태 이후에, 실리콘밸리 은행 뱅크런 사태 이후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것이 궁금해서, 왜냐하면 비교법적으로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거든. 그것은 잘 아시나?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윤영은 미국의 경우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2008년 당시에는 좀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고 그 이후의 사태에서는 말하자면 소비자의 뱅크런 방지라든가 또는 시스템 안정성에 주는 효과 측면에서 좀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적극적인 자금의 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SVB 사태 이후에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Bank Term Funding Program) 해 가지고, BTFP 해 가지고 조성해서 다른 은행에 전이되지 않도록 유동성 신속하게 공급한 그 시스템을 구축했던데, 그것을 잘 모르시나?

그래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보면 사실 금융위기라는 게 잠깐의, 예를 들어서 0.1mm의 틈으로 시작하는 것이 결국은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사태를 가져오는데 이 부실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유동성 공급과 또 자본확충 등 자금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계정 신속히 도입해야 되고 또 이 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우 위원 제가 사실 이 법 심의할 때 몇 가지 지적을 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예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민국 위원님 SVB 같은 경우도 예보에서 예보 한도를 늘렸다가, 바로 해 준다고 했다가 미국 재무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FRB하고 세 군데가 삼자 협의해서 그 조치를 했고, 그 조치를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의회에서 잘못된 발언이라고 해서 사과까지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유동성 지원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것이고 예보는 부실금융기관 처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유동성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2금융권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

는 거버넌스 문제였습니다.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사전적으로 들어가는 건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참고로 대안이 좀 배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대안은 금융위원회가 하되 한국은행과 그다음에 관련 부보기관들이 협의하고 이런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다면, 그리고 이 정신을 명확하게 안 하고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한국은행하고도 최근에 협의를 해 본 결과, 자신들도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 마련된 안 정도로 해서 금안계정의 설치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건 괜찮다고 보입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이게 기존 예보기금 지원 신청보다 한 단계 더 돼 있는 거지요? 한국은행하고 지금 금융위원회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안정계정 활성화 여부를 결정하고 이걸 발표한 이후에 예보에서 지금 하는 것 아닌가, 맞지요?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윤영은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게 아까 이용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윤영은 예.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결정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종민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세요?

그런데 이게 대안이 이용우 위원님이 제안한 거예요?

○이용우 위원 이거요? 금융위하고 상의해 가지고……

○소위원장 김종민 금융위하고 상의해서?

○이용우 위원 상의하고 같이 협의를 했다……

○소위원장 김종민 예보위, 사전 승인……

그런데 금안계정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 대안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게 금융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금안계정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 대안만 가지고는 그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것도 이따가 회의 전까지 한 번 더 봅시다.

○김희곤 위원 이것 그동안에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용우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소 정리가

됐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방금 우리 대안이 나온 것처럼 됐는데 이 금안계정 도입 자체를, 지금 논의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자체가 아예 무산돼 버리거든요.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소방차를 가지고 있는 거지만 이 금안계정은 소화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즉 급할 때 즉시에 불을 끄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통과를 시켜도 사전에 이게 어떤 돈이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됐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런데 20조를 가지고 200조 위기를 막을 수 있나? 진압이 돼요, 화재 진압이?

○김희곤 위원 급할 때는 소화기로도……

○소위원장 김종민 그 소화기하고 화재 규모가 달라 가지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마 선제적으로 저희가 그걸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소위원장 김종민 예?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선제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우 위원 예전에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은 이 행위를 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일종의 서별관 회의에서 따로 모여 가지고 했던 그런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의결기구나 이런 건 명확하게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고, 또한 금안계정은 사실은 리스크가 초기에 발생해서 부도가 나기 전에 응급조치를 하는 거고 이 금안계정을 둘 수 있는 그 근거 계정을 두는 것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했던 것은 서별관 회의처럼 거버넌스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채 누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도구는 가지고 있되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자 이런 의미였고, 대안 자체가 그 취지를 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한 가지 잠깐 양해를 좀 구할게요. 일단 이 문제는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오늘 회의 전에는 판단을 해서 명확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반대 의견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시니까 제가 반대 의견을 조금 강하게 주장할지 아니면 접어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 볼게요.

○윤한홍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찬성하면 위원장님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강민국 위원 별 이견이 없는데요, 왜……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니까 위원장은 따라가는데 저는 또 위원회의 한 사람이니까……

○강민국 위원 아니, 이것은 여야가 별 이견이 없는 건데……

○박재호 위원 한 10분 쉬었다 합시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한 10분 정회해서 생각 좀 하시고……

○강민국 위원 그러면 머리를 좀 식히고 합시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잠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13인)

강민국	김성주	김종민	김한규
김희곤	박재호	오기형	유의동
윤주경	윤창현	윤한홍	이용우
조웅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전문위원	권태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가보훈부			
차관	윤종진		
보훈정책실장	오진영		
보상정책국장	황의균		
보훈예우정책관	남궁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기획조정관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신진창		
자본시장국장	박민우		
구조개선정책관	윤영은		
금융혁신기획단장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
예금보험공사부사장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경찰청차장
해양경찰청
제도발전TF단장

안	창	국
서	재	완
윤	차	용
양	태	영
조	지	호
최	진	모